

**행정자료를 이용한
가계자산 추계방안연구**

2006.12.

통계개발원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2006년도 연구과제인 「행정자료를 이용한 가계자산 추계방안연구」의 연구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년 12월

경제통계실장 한 성호

연구자 : 박 소현

목 차

I. 서론	1
II. 가계자산의 정의	2
III. 외국의 가계자산추계 사례	14
IV. 가계자산 관련 행정정보	18
V. 자산소유주의 식별	32
VI. 문제점 및 향후 과제	36
참고문헌	41
부 록	43
1. Income unit, 가족(family), 가구(household) 정의	43
2. 자산종류	45
3. 자산별 주요 등기(등록)	49
4. 자산별 가치평가 방법	51
5.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	56
6. 개인택시 소유자 주소지와 사용본거지 통계표	57
7. 비사업용 개인용 자동차 등록대수 통계표	58
8. 영업용 자동차 등록대수 통계표	59
9. 자산별 등록대장	60

1. 서론

자산은 소비, 주거, 은퇴시기 결정 등 가계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 하는데 중요한 요소이지만 우리나라에 가계자산의 규모와 분포에 대해 발표한 자산통계¹⁾는 없다. 가계자산과 관련된 통계의 개발이 다른 부문의 통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유는 가계가 자산에 대한 정보제공에 소극적인데 기인한다. 특히 조사를 통해 자산통계를 작성하는 방법은 자산소유분포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부유층의 조사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조사 결과 자산 규모의 과소 추정과 자산소유분포의 왜곡을 가져오기 쉽다.

따라서 조사방법을 대체하는 통계작성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행정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자산을 추계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행정 자료를 이용해서 자산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각 자산의 소유 및 자산의 가치에 대한 정보가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행정자료의 입수가 가능해야 되는 전제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등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행정자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산평가액이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이는 문제점도 있다. 그러나 행정자료는 전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산소유에 대한 분포분석과 자산규모의 추세변동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행정자료를 이용한 가계자산추계를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서 행정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부가적으로 행정 자료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소유주 식별코드의 구분 및 행정자료를 이용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1) 통계청이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 자산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발표하지 않았으며, 최근 자산과 관련하여 2005년 국민연금공단 연구원이 가구패널조사를 실시하고, 2006년 통계청이 가계자산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II. 가계자산의 정의

가계자산통계와 관련하여 가계 및 자산에 대한 정의나 포괄범위 등을 다루고 있는 국제적인 전문 권고안은 아직 작성된 것이 없으며, LWS (Luxembourg Wealth Study)에서 이에 대한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가계 및 자산에 대해 제시된 정의와 포괄범위는 거시적 측면에서 '93SNA에서 제시한 내용과 미시적 측면에서 소득통계 등의 작성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제시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들과 우리나라 행정자료에서의 관련개념들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가계자산의 추계에 행정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1. 가계 관련 개념

가계 관련 정의로는 '93SNA의 가구(household)에 대한 정의를 비롯하여 UN인구주택총조사 권고안, 캔버라 소득통계 전문가회의 보고서 및 호주와 캐나다 통계청의 관련 정의들이 있다.

'93SNA에서는 가구(household)를 동일한 주거시설을 사용하고 소득과 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하며 특정유형의 재화 및 서비스(주로 주거와 음식)를 집합소비하는 소규모 개인집단(4.132)으로 정의하면서, 가구의 각 구성원은 가구 공동자원에 대해 어느 정도 청구권(4.133)을 갖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가구는 가족과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양로원, 교도소, 수도원, 정신병원 등의 시설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거나 장기간 또는 무기한 거주할 것으로 기대되는 개인들처럼 경제에 관한 자율적 결정권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시설수용 가구(institutional household)로 처리하지만(4.136) 병원, 진료소, 요양소, 종교휴양소 등에 단기간 동안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숙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단기복역수 등은 그들이 원래 소속된 가구의 구성원으로 처리한다(4.137). 또한 고용주와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는 하인이나 기타 유급 가사종사자들은 현물 보상으로 주거와 음식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고용주 가구의 공동자원에 대한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고용주의 가구 구성원이 될 수 없으며(4.135) 이들은 고용주와는 별도의 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UN 인구주택총조사 권고안(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fo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Revision 1)은 개인(Person), 가구(Household) 및 가족(Family)에 대한 정의와 이들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가구의 경우 housekeeping 개념과 일치하는 정의와 household-dwelling 개념과 일치하는 2가지의 정의가 있는데, 국가에 따라 housekeeping 개념을 사용하거나 household-dwelling 개념을 사용한다.(1.326) household-dwelling 개념 측면에서 가구는 한 개의 housing unit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1.326)

housekeeping 개념 측면에서 가구는 생활하는데 필요한 음식이나 기타 필수적인 요소들을 가구원들 스스로 준비하고, 그들의 소득을 공동 소유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까지는 공동의 생활비를 가진다.(1.324) 군대, 교도소, 기숙사, 종교시설, 병원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호텔이나 하숙집에 사는 사람들은 공동 취사여부에 따라 1인 가구 또는 다인가구로 분류한다.(1.330, 1.331) 가구는 housing unit이나 하숙집, 호텔, 캠프와 같은 공동거주지에 살수도 있으며 집이 없을(homeless) 수도 있다.(2.62)

가구에는 1인 가구도 있으며 2명 이상으로 구성된 다인(multi-person)가구도 있는데(1.324) 가구원들은 친척 또는 비친척 사람들이거나 친척과 비친척 사람들의 조합으로 구성(2.61)된다. 가구는 가구가 포함하고 있는 협의 개념의 가족(family nuclei)의 수와 가구의 다른 구성원과 협의 개념의 가족(family nuclei)과의 관계에 따라 1인 가구, 핵가구(nuclear household), 확대가구(extended household), 복합가구(composite household)로 구분한다.(2.82) (도표1 참조)

가족(family)이란 혈연, 입양 또는 결혼을 통해 특정한 정도까지 친척관계에 있는 가구의 구성원들로(2.63) 가족은 적어도 2인 이상으로만 구성되며, 1개의 가구는 2개 이상의 가족 단위를 포함할 수 있으나, 가족은 2개 이상의 가구를 포함할 수 없다.(2.65) 가족의 한 형태인 협의 개념의 가족(family

nucleus)에는 아이가 없는 결혼한 커플, 1명 이상의 결혼하지 않은 아이가 있는 결혼한 커플, 1명 이상의 결혼하지 않은 아이가 있는 아버지, 1명 이상의 결혼하지 않은 아이가 있는 어머니의 4가지 형태가 있다. (2.78) 여기서 동거커플도 결혼한 커플로 간주하며 아이의 나이는 관계없으며 아이의 현재 배우자 유무가 기준(2.80)이 된다. 그 밖의 가족형태로 자식이나 부모 없이 함께 사는 형제 또는 자매, 자식 없는 조카와 함께 사는 이모, 결혼한 자식 및 자식의 가족들과 함께 사는 사별한 부모 등의 사례가 있다.(2.81)

<도표1> 가구종류별 구성요건

가구종류	구성요건
핵가구 (nuclear household)	- 1개의 협의가족(family nucleus)으로 구성
확대가구 (extended household)	- 1개의 협의가족(family nucleus)과 이들의 친척으로 구성 - 서로 친척인 2개 이상의 협의가족(family nuclei)으로 구성 - 서로 친척인 2개 이상의 협의가족(family nuclei)과 적어도 이들 중 1개의 가족과 친척으로 구성 - 서로 친척이나 협의가족(family nucleus)이 아닌 2명 이상의 친척으로 구성
복합가구 (composite household)	- 1개의 협의가족(family nucleus)과 비친척인 사람들로 구성 - 1개의 협의가족(family nucleus)과 일부는 친척이고 나머지는 비친척인 사람들로 구성 - 서로 친척인 2개 이상의 협의가족(family nuclei)과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들 가족 중 1개의 가족과 모두 친척이 아니거나 일부는 친척이고 나머지는 친척이 아닌 사람들로 구성 - 서로 친척관계가 아닌 2개 이상의 협의가족(family nuclei)으로 구성 - 서로 친척이지만 1개의 협의가족(family nucleus)이 아닌 사람들과 다른 비친척인 사람들로 구성 - 단지 비친척인 사람들로만 구성

캔버라그룹의 가구소득 통계 전문가회의 보고서[Expert Group(The Canberra Group) on Household Income Statistics]에 의하면 가계 소득이나

자산 등에 대한 통계단위로서 가구(households), 광의 개념의 가족(economic families), 협의 개념의 가족(nuclear families), Income Units 및 가족에 소속되지 않은 무소속 개인(unattached individuals-persona not in families)을 사용할 수 있다.

가구란 한 개의 거처(dwelling)²⁾를 공유하는 사람³⁾들이 가장 기본적인 정의이고 다소 더 제한적인 정의는 한 개의 거처를 공유하면서 함께 취사하는 사람들로 정의한다. 가구는 다른 가구구성원 모두와 혈연, 결혼 또는 입양으로 연관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할 수 있으며 셋방 든 사람이나 하숙인도 가구구성원에 포함한다.

광의 개념의 가족(economic families)은 한 개의 거처를 공유하는 혈연, 결혼 또는 입양으로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데 가족 내에는 2명 이상의 사람이 존재하고 그들 중 1명의 연령이 최소한 15~16세이어야 한다. 법적 결혼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동일하게 취급한다. 협의 개념의 가족(nuclear families)은 한 개의 거처를 공유하는 부모와 결혼하지 않은 자녀로 구성되며 이때 자녀의 연령을 제한하기도 한다.

Income Units는 공유되는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가구내 개인이나 친척 집단을 의미한다. 가족에 소속되지 않은 무소속 개인(unattached individuals-person not in families)은 혼자 사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과 한 개의 거처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2가지 집단으로 분류하는데 혼자 사는 사람이란 한 개의 거처에 혼자 기거하면서 혼자 식사하는 사람으로 가구에서의 1인 가구와 동일하다. 다른 사람들과 한 개의 거처를 공유하는 사람들 중 가족에 소속되지 않은 무소속의 개인은 가족에 대한 정의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는데 광의의 가족 개념에 의하면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과 친척관계가 아닌 사람이 가족에 소속되지 않은 무소속 개인이며 협의의 가족 개념에 의하면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과 부모-자식관계가 아닌 사람이 가족에 소속되지 않은 무소속 개인이다.

2)거처(dwelling)란 구조적으로 건물 밖이나 건물 내부 공동 복도 또는 층계로부터 개별 입구를 가진 독립생활구역(A structurally separate set of living premises with a private entrance from outside the building or from a common hallway or stairway inside)

3)Eurostat의 household dwelling 정의에 해당

호주는 1995년 가구의 소득, 소비, 저축 및 자산과 관련된 잠정구조 (Household Income, Consumption, Saving and Wealth, A Provisional Framework, 1995) 7장 통계단위에서 개인(Person), 가구(Household), 가족(Family), Income unit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가구는 대개 함께 거주하고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1인가구와 다인(multi-person)가구가 있는데 구체적인 정의는 UN의 인구주택총조사 권고안에서 정의하는 housekeeping 측면의 가구에 대한 정의와 동일하다. 단 가구원들이 소득을 공유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가구에 대한 정의의 필수 기준은 아니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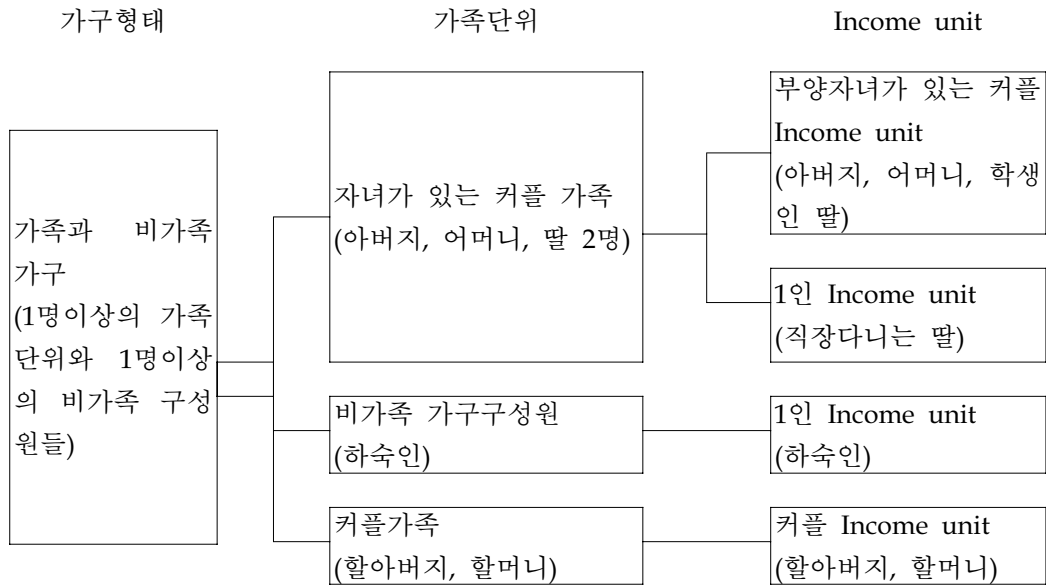
가족은 대개 함께 사는 2명 이상의 친척으로 구성되며, 이들 중 1명이 적어도 15세 이상이어야 하며 같은 가구 내에 거주해야 된다. 친척은 혈연, 결혼(등록 또는 사실혼), 입양, 수양, 계부(모) 관계로 형성되며 가족은 각 결혼한 커플이나 부모-자식의 관계로 구성된다. 다른 가구에서 사는 가족 구성원은 가족에서 제외되며 같은 가구 내에 사는 비친척 개인(즉 친구, 하숙인, 가정부)도 그들이 15세 이상이면 가족구성원에서 제외된다. 1개의 가구에는 2개 이상의 가족이 존재할 수 있다.

Income unit은 개인이나 한 가구 내 소득에 대한 소유권이 공동인 친척으로 정의하는데 친척관계는 결혼이나 같은 가구 내에 거주하는 부모-부양자녀의 관계로 제한한다. 1개의 가구는 1개 이상의 가족을 포함할 수 있으며, 각 가족 내에는 1개 이상의 Income unit은 포함될 수 있고 가구, 가족, Income unit이 동일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직장 다니는 딸, 딸 친구(하숙인), 20세의 학생인 딸로 구성된 1개의 가구에는 3개의 가족과 4개의 Income unit이 존재한다.(도표2 참조)

캐나다 통계청은 사회조사의 통계단위로 개인(Person), 협의 개념의 가족(Census family), 광의 개념의 가족(Economic family) 및 가구(Household)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구는 같은 거처를 공유하고 캐나다나 해외에 그 밖의 일상적인 거주 장소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나 사람들의 집단으로 정의한다. 일시적으로 같은 거처에 없는 가구 구성원은 가구에 포함한다.

<도표2> 가구, 가족, Income unit의 관계



협의 개념의 가족(Census family)란 결혼한 커플과 자녀, 사실혼 관계의 부부와 자녀, 같은 거처에 적어도 1명 이상의 자녀와 살고 있는 어떤 혼인상태의 편부모와 자녀로 정의한다. 가족 구성원 모두는 같은 거처에 살며, 자녀들은 같은 거처에 살고 그 거처에 사는 그들의 배우자나 자녀가 없으면 나이나 결혼 상태에 관계없이 가족 구성원에 포함한다. 부모 없이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손자녀도 협의 개념의 가족(Census family)에 포함된다. 광의 개념의 가족(Economic family)은 같은 거처에 살면서 혈연, 결혼, 관습상 또는 입양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는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협의 개념의 가족(Census family)의 구성원 모두는 광의 개념의 가족(Economic family)의 구성원이 된다. 캐나다 통계청의 가계자산조사인 Survey of Financial Security는 family 단위로 조사하였는데, 이때 family는 광의 개념의 가족(Economic family)과 가족에 소속되지 않은 무소속 개인(unattached individuals)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에는 가계와 관련된 용어로 세대, 가구 및 가족이 있다. 세대는 주로 행정업무에 사용하는 개념으로 주민등록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있다. 주민등록상 세대는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들이 1세대를 구성하는데 세대별주민등록표에는 같은 거주지에 사는 일정한 친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친족이 아닌 사람이 동거인으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될 수 있다. 즉 친족이 아니어도 세대원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친족은 동일 호적상에 등재된 경우이며 동일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동거인으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다.

국세청은 부동산 소유와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1조의2에서 부동산 소유자와 그 배우자는 동일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여부와 관련 없이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상의 세대 개념을 조정하고 있다. 즉 세대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한다.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1세대로 인정하고 있다. 혼인으로 1세대를 구성하거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한 합가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 또는 합가한 날로부터 2년 동안 각각 1세대로 간주한다.

가구에 대한 개념은 주로 통계조사에 사용하는 개념으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로 일반가구, 집단가구, 외국인가가 있다. 일반가구는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가족이 아닌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 가구로 세분할 수 있다. 집단가구는 가족이 아닌 6인 이상 19인 이하의 가구와 기숙사나 고아원, 양로원, 보육원 등 사회시설에 집단으로 살고 있는 가구를 포함한다. 외국인가구는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를 의미하며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경우는 일반가구로 분류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취사와 취침 등 생계만을 고려할 뿐, '93SNA에서처럼 소득과 부 등 가계 공동자원에 대한 청구권을 고려하지 않음에 따라 인구주택총조사에는 가정부, 하숙생, 운전사, 고시원생(공동취사의 경우) 등을 가구원으로 포함한다. '93SNA는 해당 가구로부터 떠나 있는 기간에 따라 장기인

경우만 가구원에서 제외하나, 인구주택총조사는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가구원 포함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군복무, 취업, 교육 등으로 함께 살지 않거나 교도소, 사회복지시설, 요양원 등에 있으면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가족은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으로 인구주택총조사는 정의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정의한다.

‘93SNA, UN인구센서스 권고안, 소득통계전문가(캔버라)회의, 호주, 캐나다 등의 가계 관련 개념들을 검토해보면 가구(household)는 가장 넓은 개념으로 같은 거처를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로 셋방 사는 사람도 포함하며, 이보다 좁은 의미는 같은 거처를 공유하고 공동취사를 하는 경우이고 가장 좁은 의미는 같은 거처를 공유하고 공동취사를 하며 어느 정도 소득을 공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가족(family)은 기본적으로 같은 거처를 공유하는 가구원들 중에서 결혼, 입양, 혈연 등으로 연관된 친척들을 의미하는 넓은 개념과 부모와 자녀 2대만으로 구성된 협의 개념이 있는데 협의의 개념에서 자녀의 연령이나 결혼 상태에 대해서는 규정이 나라마다 다르지만, 자녀의 배우자나 그의 자식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부모와 다른 가족을 형성한다.

우리나라의 세대개념은 가족이 아닌 동거인의 포함 가능성을 고려할 때 외국의 가구개념과 비교해 보면 같은 거처를 공유하고 공동취사를 하는 경우가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즉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다른 거처에 살아도 별도 세대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부동산 취득, 학교배정 등을 위해 동일 거처에서 공동취사를 하면서도 주민등록에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등 가구개념과 불일치하는 사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취업 등으로 임대한 다른 거처에 사는 경우 임대차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획득을 위해서는 거처지에 주민등록을 등록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위장전입자에 대한 단속 및 아파트 같은 경우 현재 세대가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 다른 세대가 이전할 수 없는 조치 등으로 세대와 가구의 불일치 정도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자산의 종류

'93SNA에서 자산은 경제자산 만을 의미한다(10.10~10.11). 즉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고(2.41), 소유자가 일정기간동안 이를 보유 또는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이득⁴⁾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1.26, 2.41) 소유권이 있어도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경제 하부구조, 상대가격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장래에 그 소유자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없는 경우 경제자산이 아니다(10.10~10.11).

자산은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생산자산 및 비생산자산)으로 분류하는데(2.42) 대부분의 비금융자산은 경제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대상물이며 동시에 가치저장의 수단이 된다. 금융자산은 직접적인 가치저장수단이 되며 일부 금융자산은 재산소득 창출 및 보유이득 발생가능성을 갖고 있다.(11.16)

금융자산은 화폐용 금 및 특별인출권(SDR), 현금통화 및 예금, 주식이외 증권, 대출, 주식 및 기타 지분, 보험준비금, 기타 수취채권 또는 지급채무의 7개의 범주로 분류한다.(11.1)(부록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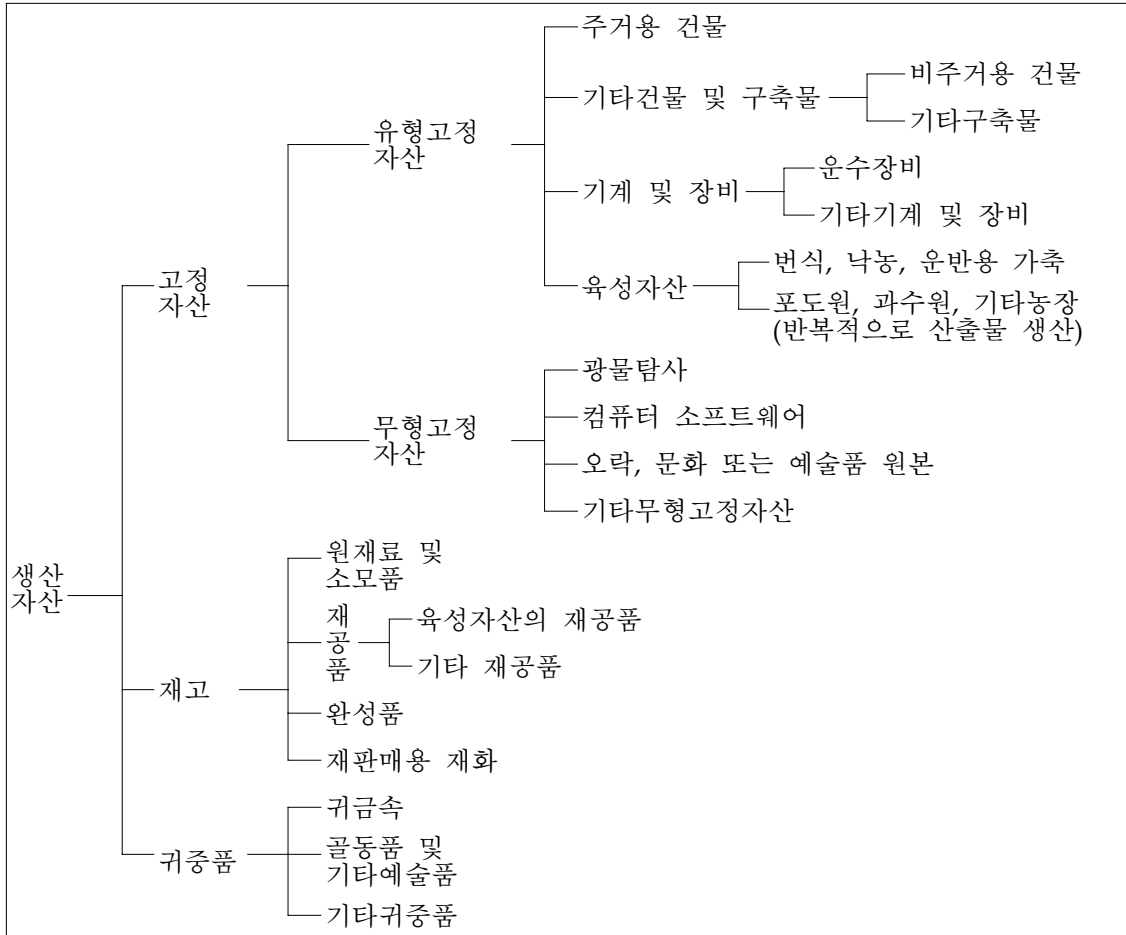
비금융자산은 생산과정에서 산출물로서 생산된 생산자산과 생산과정을 통해 산출되지 않은 비생산자산으로 구분한다. 생산자산은 고정자산, 재고, 귀중품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다시 <도표3>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고정자산이란 생산과정에서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자산을 의미하며, 재고자산은 금기 또는 전기에 생산되어 미래에 판매, 생산 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화를 의미하고 귀중품은 생산이나 소비를 1차적인 사용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실질가치가 상승하거나 최소한 하락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여 가치저장 목적으로 취득 또는 보유하는 생산자산을 의미한다.

비생산자산은 유형비생산자산과 무형비생산자산으로 구분되는데, 유형비생산자산이란 자연에서 생산되었으나 동 자산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 및 이전이 가능한 비생산자산을 의미한다. 무형비생산자산은 사회에 의해 창출된 비생산자산으로 동 자산의 소유자는 특정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4) 경제적 이득=동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도출되는 본원소득+자산의 처분 또는 해약으로 실현되는 가액

가지게 된다.(도표4 참조)

<도표3> 생산자산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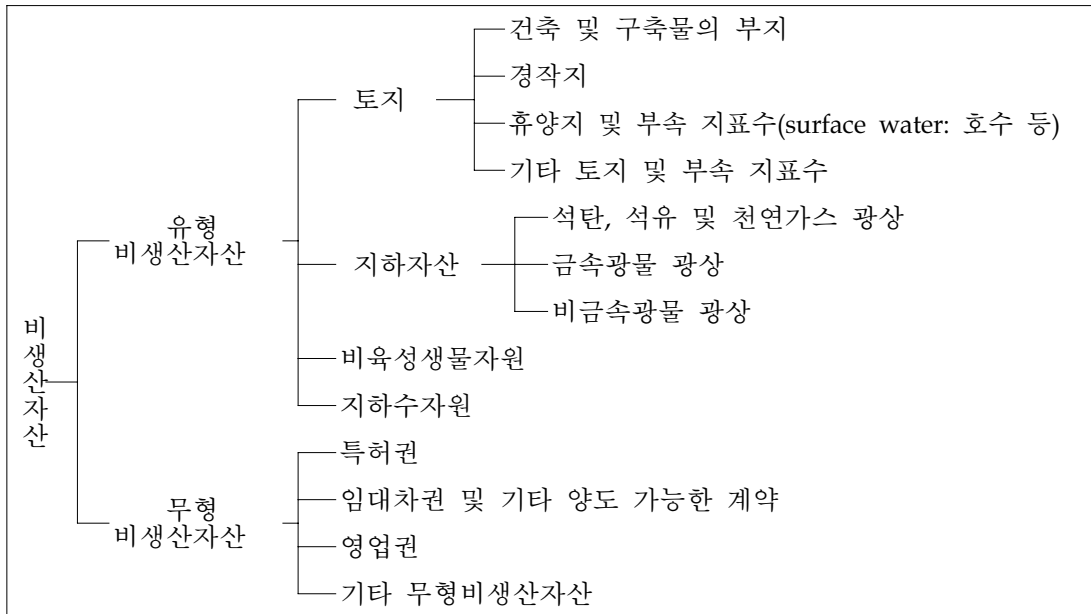
자산과 관련된 행정자료로 대표적인 것은 이들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⁵⁾에 대한 자료들로 이들 중 상속세가 가장 포괄적인 조세이다. 다른 조세들 즉 재산세는 단지 부동산과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등 상속세에 비해서 세금 부과 대상이 적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상속재산⁶⁾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

5)우리나라에 자산과 관련된 조세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일시재산소득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세, 사업소득세,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도축세 등이 있다.

6)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이 있는데 이들이 동일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무상사용이익은 증여재산이지만 상속재산은 아니다.

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제7조)

<도표4> 비생산자산의 종류



상속재산의 종류(제5조, 제61조~제66조)에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무체재산권⁷⁾, 어업권과 입어권, 광업권(조광권), 채석권, 영업권, 부동산 이외 기타유형재산, 비금전신탁재산, 금융재산, 대부금채권(질권) 등이 있다.

부동산에는 토지,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건물,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타시설물 및 구축물 등이 있으며,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지상권, 골프회원권 등 특정시설물이용권이 있다. 무체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세분되는데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이 있다. 부동산 이외 기타유형재산에는 상

7)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도 포함한다.

8)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되는데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서비스표권의 5가지를 의미하나 넓게는 반도체회로배치설계권, 노하우권, 미등록주지상표권등 산업상 보호가치가 있는 권리 전부를 포함하며,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다.

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제조중인 제품, 미착상품, 판매용과 비판매용의 서화, 전적, 골동품(도자기, 토기, 철물, 목공예, 민속장신구, 선사유물, 석공예, 기타골동품)과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차량, 입목,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이 포함된다.

금융재산⁹⁾은 금융기관¹⁰⁾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예탁금, 출자금, 금전신탁재산,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수표, 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포함한다.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은 개인이 보유하지 않는 화폐용 금 및 특별 인출권과 도로, 항만 등의 기타구축물과 같은 일부자산을 제외하고 '93SNA에서 규정하는 자산들을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부록2 참조)

9)금융실명거래법 및 비밀보장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

10)금융실명거래법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III. 외국의 가계자산 추계 사례

통계에 행정자료를 잘 이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로 덴마크와 핀란드¹¹⁾는 행정자료만을 이용하여 인구센서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나 기업의 식별 코드 즉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각 행정자료 간에 연결 가능성이 우선 전제조건이다. 또한 이런 식별코드 이용을 개인의 비밀정보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 작성에 필요한데, 노르웨이나 핀란드는 개인의 자산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이 열람할 수 있을 정도로 개인정보에 대해 개방적이다.

1. 노르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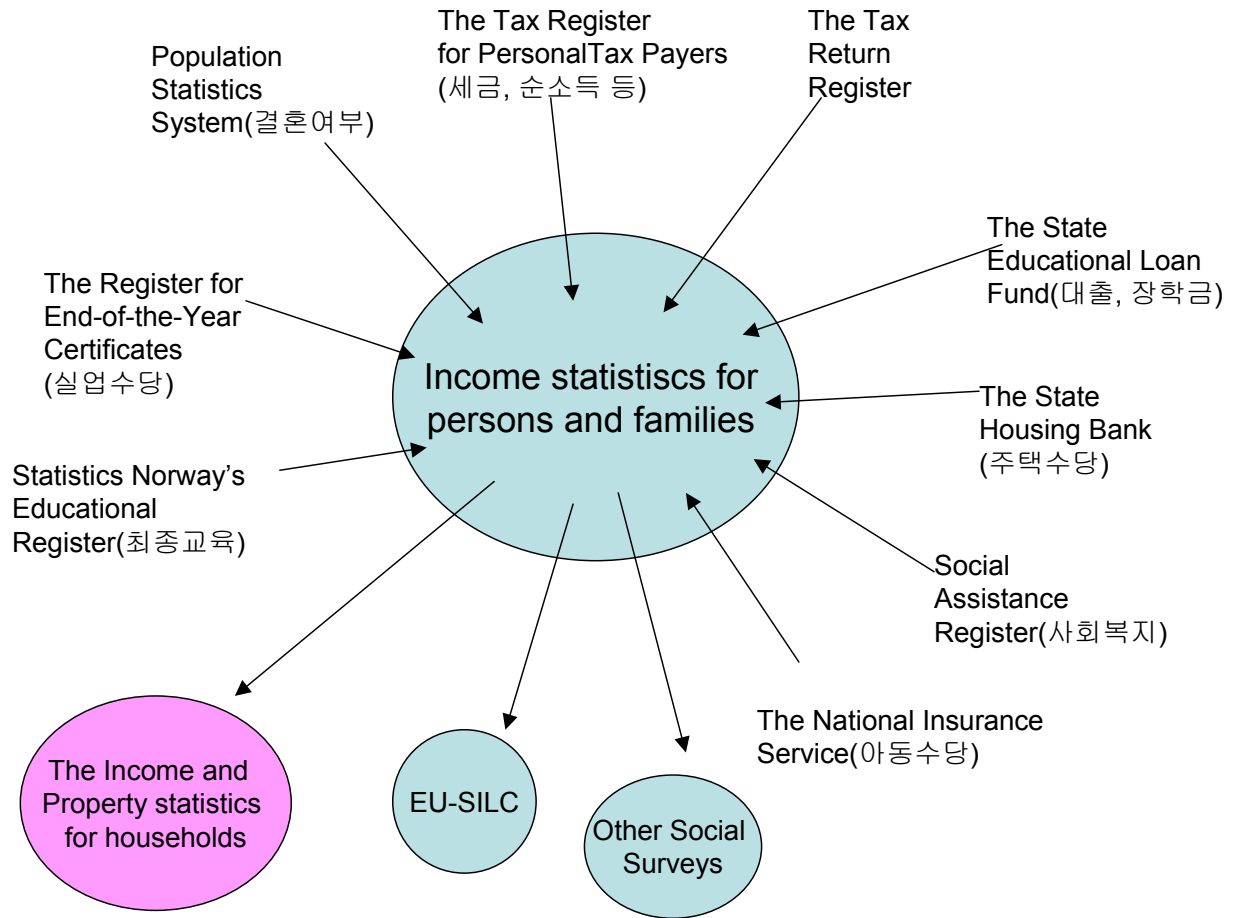
노르웨이는 개인별로 세금신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세무서에 제출하는데, 세금신고서에는 가족관계, 거주정보, 직업정보(명칭, 소재지 등), 과세소득(현물소득 및 소득종류별), 기본공제, (종류별)자산, 부채 등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노르웨이 통계청은 개인세금신고서 등의 행정자료와 개인식별코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식별코드를 기준으로 <도표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개인세금신고서와 그밖에 여러 행정정보를 연결하여 개인과 가족에 대한 다양한 소득 및 자산통계를 작성한다.

자산통계는 은행예금만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며 나머지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의 자산 가치는 장부 가치로(fiscal value)로 평가하는데 주택의 장부 가치는 시장가치의 30%정도¹²⁾이며,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의 회계가치는 시장가치의 65~100% 정도이다. 따라서 주택 등에 대해 회계가치보다 큰 금액을 대출받은 경우 순자산가치(=자산-대출)는 (-)값이 되는데, 가구의 소득 및 자산통계, 직접세 납세자 등록통계는 (-)자산을 0으로 처리하고, 세금신고서 통계는 (-)값을 그대로 사용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11)핀란드 통계의 94%는 행정자료 등을 이용한 것이며 6%만 직접 조사한다.

12)2004년 부동산의 평균회계가치는 시장가치의 20%정도이다.

<도표5> 노르웨이 소득 및 자산통계 관련 행정자료



노르웨이 통계청이 작성하고 있는 소득 및 자산에 대한 통계에는 Income statistics for persons and families, the income and wealth statistics for household, the Tax Return Register Statistics, the Tax Register(statistics) for Personal Tax Payers, Income statistics for self-employed persons가 있다.

전수통계인 Income statistics for persons and families는 전 노르웨이 거주민들에 대한 등록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의 구성 및 다른 가족 그룹 간 분포와 추세 분석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통계로 <도표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행정자료를 이용한다.

the income and wealth statistics for household도 세금신고서 자료를 기

본으로 다른 행정자료(도표5 참조)들을 이용하는데, 가족이나 개인에 대한 정보는 행정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나 가구¹³⁾구성에 대한 정보는 행정자료를 이용할 수 없어서 다른 표본조사로부터 가구구성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가구형태별, 가구원수별, 주된 소득자의 연령별, 종사상지위별, 성별 10분위 통계자료를 작성한다. 가구의 소득과 자산 분포에 대한 통계는 서울변경 등 재정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microsimulation model의 일종인 LOTTE모형의 자료로 이용된다.

전수통계인 the Tax Return Register Statistics는 노르웨이 소득통계의 중요한 기본으로 17세 이상¹⁴⁾ 노르웨이 전국 거주자의 개인별 과세소득, 기본공제, 자산, 부채에 대한 총액 및 평균액에 대한 통계를 제공한다. 소득, 기본공제, 자산 및 부채는 세무당국의 Register for Personal Tax Payers로부터 정보를 입수하며, 세금과 세금공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노르웨이 통계청의 statistics for Personal Tax Payers로부터 수집한다. 연금 등에 대한 정보는 국립보험기관으로부터 입수하고 인구정보는 노르웨이 통계청의 인구통계에서 수집한다. 소득은 단지 과세할 수 있는 소득만 포함되며 자산 및 부채와 연관된 모든 금액은 회계가치(fiscal value)로 평가한다. 실물자산(Real capital)에는 모든 부동산, 공장, 산림, 생산자산, 기타 사업자산, 주택부속물, 동산이 포함되며, 금융자산(Finance capital)에는 은행예금, 단위형 투자신탁, 유가증권, 주식 및 채권, 기타 청구권 및 자산이 포함된다.

전수통계인 the Tax Register(statistics) for Personal Tax Payers는 13세 이상 노르웨이에 납세하는 해외 사는 개인을 포함한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세금신고서 등록통계와 직접세 납세자 등록통계의 차이는 세금신고서 통계는 소득, 자산 등에 대한 통계를 중심으로 하나, 직접세 납세자 통계는 다양한 직접세에 대한 통계를 중심으로 작성한다. 세금 신고서 등록통계는 (-)자산을 그대로 사용하나,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세 납세자 등록통계는 통계작성과정에 0으로 수정한다. 일부 자산은 설정된 비과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포함된다. 통계작성에 다양한 직접세 계

13)가구(household)를 동일 거처에 함께 살면서 지출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정의한다.

14)노르웨이에서 17세가 세금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다.

산을 위해 개인 수준의 자료 즉 state, county, municipal의 소득세 및 재산세, 국립보험기구의 구성원 분담금 등 다양한 세금공제 및 감면자료를 사용하며 인구자료는 노르웨이 통계청의 인구자료를 사용한다.

표본통계인 Income statistics for self-employed persons은 자영업자의 세금신고서, 감가상각 서식 및 자영에 대한 개인소득 계산을 위한 서식으로부터 통계를 작성한다. 자료는 1인사업체와 자영업자들에 대해 수집되며 추가 정보가 노르웨이 통계청의 사업체 및 기업체 중앙등록, 세금신고서통계, 직접세 납세자 세금통계로부터 수집된다. 표본은 약 5000명의 자영업자로 구성되는데 가구의 소득과 자산 통계(the income and wealth statistics for household)의 표본에 포함되는 자영업자를 포함하며, 전년도 세금신고서통계로부터 추가로 표본을 추출한다. 표본은 자영업의 주요산업별로 층화되며 다른 등록으로부터 알려진 크기에 따라 가중한다.

2. 핀란드

핀란드는 부정기적으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분포조사에 대한 자료 수집과 연계하여 가계자산조사¹⁵⁾도 실시하지만 1921년 이후 매년 국세청 조세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자료를 이용하여 개인들의 과세대상 소득 및 자산과 부채에 대한 통계(Statistics on income and property)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2003년 통계는 과세대상 소득이 있거나 과세대상 자산을 소유한 440만 명 전체에 대한 과세대상소득 및 자산, 기초공제액, 부채, 세금, 사회부담금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집계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 소득계층별, 부부소득 계층별, 자산계층별, 세부 통계들을 발표한다. 과세대상 소득이 100여명에 불과한 소지역에 대해서도 총소득, 총세액 및 평균소득을 발표하고 있다.

소득은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으로 구분하고 이들 소득의 세분 자료를 발표하며, 자산은 부동산, 주택금융회사 지분, 해외부동산, 법인자산의 지분, 농업자산, 산림자산, 사업자산, 기타과세자산으로 세분된 자료를 발표한다.

15)최근 2004년도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IV. 가계자산 관련 행정정보

자산의 취득¹⁶⁾, 등록¹⁷⁾, 보유¹⁸⁾, 처분 및 상속(증여)와 관련된 등록대장이나 과세대장 등의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자산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행정자료가 1)자산의 소유현황에 대한 정보와 2)자산의 가치에 대한 정보 또는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text{총자산} = \sum \text{수량} \times \text{자산가치(가격)}, \quad \text{순자산} = \text{총자산} - \text{부채}$$

주요 자산들은 법률에 의해 등기 또는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대장은 소유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사업자명)명과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각 자산을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행정정보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부록3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양도소득세법, 등록세법, 취득세법 등에는 원래 과세표준액으로 시가(시장가격),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들을 평가하기 어렵거나 국민이 이들을 현저히 낮게 평가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각 자산 종류별로 매년 기준 시가나 시가표준액을 직접 지정하거나 평가하는 방법을 고시하고(부록 4 참조) 있어 행정자료에는 자산의 가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중고자산 매매에 대한 시장가격 정보, 보험가입을 위한 평가액 등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자료에 각 자산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자동차명, 연식, 형식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자동차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국세의 과세표준액¹⁹⁾ 계산

16)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은 부동산(토지, 건축물), 선박, 차량, 입목, 건설기계,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지방세법 제104조)이다.

17)등록세 과세 대상 자산은 부동산(토지, 건축물), 선박, 차량, 건설기계,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 서비스표, 영업의 허가등록(지방세법 제125조)이다.

18)재산세 과세 대상 자산은 부동산(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이다.

19)과세표준액은 세금의 기준금액(세금=과세표준액×세율)으로 과세표준액은 법률에 따라 시가(시장가격)일 수도 있고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과 동일할 수도 있으며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일 수도 있다.

에 사용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발표하는 자산가액이며,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계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하는 자산가액이다. 가격(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직접 지정하는 자산에는 주택, 토지,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서울, 6개 광역시, 경기도),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자동차, 소, 돼지가 있으며 선박, 항공기 등 그 밖의 자산들은 그들의 내용연수, 자산으로부터의 소득 등을 이용하여 자산가치를 추계하는 방법들을 규정하고 있다.

자산을 담보로 얻은 부채에 대해 채권자가 (근)저당권²⁰⁾ 등을 자산의 등기부에 설정하므로 이를 통해 가계의 부채를 추계할 수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발표하는 가계부채에 집계되지 않는 사채업자나 개인과 같은 비금융업자에게 빌린 돈에 대한 정보를 저당권 설정자에 대한 정보로부터 집계할 수 있어 행정자료로부터 가계의 순자산추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등기부에 등록된 부채관련 정보는 부채관련 비용 등이 포함된 채권최고액으로 실제 부채액보다 많으며 설정이후 상환액에 대한 정보가 없는 문제점이 있다. 그밖에 전세권(임차권)도 등기부에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권 정보는 자산액 중 임대보증금 부분만큼은 자산소유주의 순자산액이 아니라 임차인의 금융자산에 해당하므로 자산소유주와 임차인의 순자산액 조정에 이용 가능하다.

1. 부동산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및 이들의 부속시설물을 의미한다. 토지는 지적법에 의해 모두 지적공부²¹⁾에 등재하며 지적공부 중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토지의 소유권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정보²²⁾가 있다. 일반적으로 평지는 토

예) 건물 재산세 과세표준액=건물시가표준액×55%

20)토지, 건물, 임목 등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쓰는 경우로 채권자는 해당 부동산 등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동산, 유가증권(채권), 무체재산권 등 물건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쓰는 경우에는 질권을 설정한다.

21)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의미

22)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그 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 도면번호와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토지의 이동사유,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수정연월일,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

지대장에 등록하고, 수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간척지 등은 임야대장에 등록한다. 토지는 또한 법원 토지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다.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구분하며 이들 건축물대장에는 대지 및 건축면적, 지번, 층수, 주용도, 부속건축물,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유지분, 승강기, 주차장, 오수정화시설 등에 대한 정보가 있다. 건축물은 또한 법원 건물등기부에 등기한다.

토지, 건축물 및 그 부속물은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토지는 매년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이용하여 산정한 각 토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시, 군, 구청장이 고시하는데 이 자료를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으로 사용한다.

건축물 중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토지가격을 포함한 가격을 조사, 발표하고 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가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고시하는데, 2006년 1월 1일 기준 아파트 685만 가구, 연립 48만 가구, 다세대 138만 가구 등 871만 가구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을 고시하였으며 이들 공동주택가격의 총액은 962조 4,900억원으로 2005년 GDP 802조 6,200억원의 1.57배이며 1가구당 평균 1억 1,045만원이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시, 군, 구청장이 고시하는데 2006년 1월 1일 기준 430만 가구에 대해 개별주택가격 총액은 306조 9,500억원으로 1가구당 평균 7,000만원이다. 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은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으로 사용한다.

건축물중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소재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토지가격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고시하는데 이를 기준시가로만 사용하고 시가표준액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 밖의 건물에 대해

일에 대한 정보가 있다

서는 토지가격은 제외하고 건물에 대해서만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다. 기준시가는 m^2 당 금액 \times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인데, m^2 당 금액의 시산 방법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시가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 기준시가지에서 약간 다르다.

상업용건물과 오피스텔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times 구조지수 \times 용도지수 \times 위치지수 \times 경과연수별잔가율 \times 면적 \times 가감산특례로 기준시가와 유사하지만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 등의 평가방법이 다르다.

지방세는 건축물의 시설물 및 부속시설물도 과세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방법을 고시하고 있다. 시설물에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 및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기타시설로 구분한다. 레저시설에는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시설물,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방법을 지정하고 있다. 옥외저장시설에는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에 대해서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에는 도크, 조선대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방법을 고시하고 있다. 도관시설에는 송유관, 가스관, 열송수관에 대해서 급,배수시설에는 송수관, 급,배수시설, 복개설비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방법을 고시하고 있다. 에너지공급시설에는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에 대해서 기타시설은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시설,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방법을 고시하고 있다.

부속시설물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기타승강시설, 20Kw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 욕탕용 보일러, 7,560Kcal급 이상의 에어컨,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구내 변전, 배전시설의 시가표준액 산출방법을 고시하고 있다.

2. 자동차[오토바이(이륜자동차), 트레일러 포함]

자동차(오토바이, 트레일러 포함) 소유에 대한 자료는 자동차 등록현황자료를 자동차가격에 대한 자료는 자동차관련 세금 및 자동차보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의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하지 못하므로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해야 되며 따라서 자산관련 행정자료들 중 가장 정확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록대상 자동차²³⁾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²⁴⁾로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등록원부(갑)에는 최종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와 자동차에 대한 정보인 차명, 차종, 차대번호, 용도, 연식, 형식승인번호(제원관리번호) 및 사용본거지 주소 등에 대한 자료가 있다. 자동차등록원부(갑)에 있는 최종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소유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가치에 대한 자료는 없으나 자동차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차명, 차종, 차대번호, 연식, 형식승인번호(제원관리번호) 등의 자료도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 중 차량을 등록할 때 부과되는 자동차 등록세 및 취득세와 관련하여 자동차 시가표준액 관련 자료를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하고 있다.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은 차종,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²⁵⁾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으로 자동차의 가치에 대한 정보로 사용할 수 있다.

자동차, 건설기계, 50cc이상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으로 자동차보험에는 자동차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험 가입대상 자동차명, 연식, 사용용도²⁶⁾(자가용, 업무용, 영업용), 차대번호 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 가계의 자동차 소유현황에 대한 자료로 이용 가능하나 보험 미가입차량 등

23)자동차관리법 제2조에서 자동차는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은 제외한다.

24)배기량 50CC미만의 것은 제외한다.

25)기준가격은 매년 변경하는데 2006년도에는 12,533개의 차종의 기준가격을 고시하였다.

승용차 (국산)	승용차 (외산)	승합차 (국산)	승합차 (외산)	화물차 (국산)	화물차 (외산)	이륜차 (국산)	이륜차 (외산)
4,151개	1,266개	1,880개	28개	4,400개	71개	227개	510개

26)이륜자동차는 출퇴근 및 가정용, 음식점배달용, 퀵서비스(영업용) 및 법인용으로 구분한다.

을 고려할 때 자동차등록원부에 비해 자료의 유용성이 낮다. 그러나 자동차

<시가표준액 산출 사례>

- 차 량: 오피러스 3.0 GH고급형(비영업용)
- 기 준 가격: 30,097천원
- 연 식: 2003년도
- 시가표준액: 30,097천원×0.422=12,701천원

<도표6> 2006년도 자동차 내용년수 및 잔가율

차 종	용 도	내용 년수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승 용 자동차	영 업 용	4년	0.708	0.562	0.316	0.178	0.100	-	-	-	-	-	-	-	-
	비영업용	12년	0.768	0.650	0.563	0.422	0.316	0.236	0.178	0.133	0.100	0.090	0.080	0.070	0.060
승 합 자동차	영 업 용	6년	0.703	0.562	0.464	0.316	0.215	0.147	0.100	-	-	-	-	-	-
	비영업용	12년	0.768	0.650	0.563	0.422	0.316	0.236	0.178	0.133	0.100	0.090	0.080	0.070	0.060
화 물 자동차	영 업 용	6년	0.703	0.562	0.464	0.316	0.215	0.147	0.100	-	-	-	-	-	-
	비영업용	12년	0.768	0.650	0.563	0.422	0.316	0.236	0.178	0.133	0.100	0.090	0.080	0.070	0.060
이 른 자동차	공 통	6년	0.703	0.562	0.464	0.316	0.215	0.147	0.100	-	-	-	-	-	-

의 가치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시가표준액보다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이 더 높다. 보험개발원에서는 분기별로 자동차가격을 조사하여 연식별(10년간), 변속기별(수동, 자동 등) 및 스테레오 등 주요 옵션품목의 장착여부 등을 기준으로 차량기준가액표²⁷⁾를 작성, 차량손해 보험료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부록5 참조)

자동차시가표준액과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를 비교하여 보면 기아 자동차 오피러스3.0 2003년식 GH고급형의 자동차시가표준액은 1,270만원이며, 차량기준가액표는 1,838만원(2006년 10월 자료)이다. 이는 2006년 11월 2일 기준 중고자동차시세²⁸⁾ 1,940~2,140만원과 비교할 때 보험개발원의 차량

²⁷⁾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국산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기준가액을 검색할 수 있다.

기준가액은 시장가격의 80~90% 정도로 자동차시가표준액보다 시장가격에 더 근접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의 자산액 추계를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의 자동차등록대수와 자동차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3. 선박(어선)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 종류로 기선²⁹⁾, 범선³⁰⁾, 부선³¹⁾으로 구분한다. 선박법에 의하면 선박은 총 톤수 20톤을 기준으로 소유현황을 등록하는 대장이 다르며 어선법에 의하면 어선으로 사용할 목적의 선박은 어선으로 별도 등록하여야 한다. 총 20톤 이상의 선박은 법원에 선박등기를 하여야 항해할 수 있으며 등기 후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당해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면 지방청장은 이를 선박원부에 등록해야 한다. 총 톤수 20톤 미만의 기선과 총 톤수 5톤 이상 20톤 미만의 범선, 총톤수 20톤 이상 100톤 미만의 부선³²⁾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적증서원부의 기재를 신청할 수 있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선적증서원부에 기재되어야 발급되는 선적증서가 없으면 항해를 할 수가 없다.

어선이란 어선법에 의하면 어업·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 조사, 지도, 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어선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어선은 어선원부에 기재된다.³³⁾

선박원부, 선박증서원부, 어선원부에는 선박번호, 선박의 종류, 선박의 명칭, 선적항, 선질, 선박의 길이, 너비 및 깊이, 총톤수, 추진기관의 종류,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진수일 등에 대한 자료를 기재한다.

선박은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시가표준액 자료가 있는

28)엔카(www.encar.com) 시세표 참조

29)기선이란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

30)범선이란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

31)부선이란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32)선박계류용, 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은 제외

33)총 톤수가 20톤 이상인 어선은 우선 선박등기 후 어선원부에 등록한다.

데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선종, 용도 및 건조가격을 참작하여 톤수 간에 차등을 둔 단계별 기준가액에 해당 톤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선박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급냉시설 등의 유무에 다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2006년 현재 7개 선종별 18개 용도별 108개 톤수별 기준가액과 선박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시하고 있다.

4. 항공기

항공기 소유에 대한 자료는 항공기등록원부 자료를 항공기 가격에 대한 자료는 항공기관관련 세금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항공기관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 항공법 제3조에 의해 소유권, 임차권 등을 등록하도록 되어있으며, 항공법 제8조에 따라 항공기등록원부에는 항공기의 형식, 항공기의 제작자, 항공기의 제작번호, 항공기의 정치장, 소유자 또는 임차인, 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 등록연월일, 등록기호 등의 자료를 등록한다.

항공기는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항공기의 시가표준액 자료가 있는데 시가표준액은 기종, 형식, 제작회사, 정원, 최대이륙중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수입하는 경우 수입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항공기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2006년 현재 77종의 고정익과 56종의 회전익(헬리콥터)에 대한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다.

항공안전본부 발표에 의하면 항공기는 2006년 8월말 현재 311대가 등록되어 있으나 개인소유는 1979년 제작된 정원 4인용 비행기 1대뿐이다.

5. 기계장비(건설기계)

기계장비는 가계가 영업용으로 주로 사용하며 종류가 다양하지만 행정자료 이용이 가능한 품목은 건설기계³⁴⁾ 30종이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면 시

도지사에게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를 등록한 후에만 사용하거나 운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등록을 하면 시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건설기계등록원부에는 건설기계명, 형식, 규격, 차대일련번호, 제작국/연식, 제작회사, 형식승인번호, 용도 등 차량의 특성에 대한 정보와 소유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한 정보가 있다.

<도표7> 건설기계종류

불도우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우터그레이더, 로올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벙칭플랜트, 콘크리트휘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휘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쇠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향타 및 향발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노면측정장비,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선별기

건설기계는 등록세,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기계장비의 시가표준액은 종류, 톤수, 형별,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 80조) 2006년 현재 7,254개 종류의 건설기계에 대한 기준가액을 고시하고 있다.

6. 나무(입목)

입목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의하면 입목이라 함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의미하는데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으로 하고 있다. 입목으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목 집단 소재지 시군의 입목등록원부에 먼저 등록한 후 법원 입목등기부에 등기 할 수 있다. 입목등록원부에는 수종, 수령, 수량, 조사년도, 소유자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다.

34)건설기계관리법에는 26종을 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2에 의하면 노면측정장비,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선별기도 과세대상이다.

입목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시가표준액은 수종, 수령별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입목의 재적, 본수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다.(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2006년 현재 사과, 배 등 17종³⁵⁾의 과수에 대해서는 수종별, 구령별, 1본당 거래실례가액을 조사하여 결정한 시가표준액 자료와 소나무, 낙엽송 등 18종³⁶⁾의 입목에 대해서는 m³당 기준가액 자료를 고시하고 있다.

7. 가축

축산법에 의해 종축업(종돈, 종계) 및 일정 시설규모³⁷⁾ 이상의 소사육업(육우, 젓소), 양돈, 양계, 오리사육업을 할 때는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하면 해당관청은 이를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대장에 등재하는데 등록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뿐만 아니라, 축종과 사육두수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여 이들 자료를 기초로 각 가축사육업의 실제 사육두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돼지와 소는 도축할 때 도축세를 납부해야 되며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가 조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2004년 상반기 155개 시,군,구의 도축세의 과세표준액을 비교해보면 소 500kg을 기준으로 230만원에서 529만8천원까지 가격차이가 컸으며, 돼지는 100kg을 기준으로 148천원에서 250천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

8. 특정시설물이용권(회원권)

회원권은 회원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회원권중 과세 대상으로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승마회원권³⁸⁾

35)과수 17종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자두, 매실, 호도, 앵두, 대추, 살구, 모과, 다래, 보통온주밀감, 조생온주밀감, 기타과

36)입목 18종은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삼나무(편백), 은행나무, 미루나무, 은수원사시, 오동나무, 밤나무, 호두나무, 맹종죽, 이태리포푸라, 참나무, 아카시아, 오리나무, 고로쇠나무,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37)가축사육시설면적이 소사육업 300m², 양돈50m², 양계 300m², 오리사육업 300m² 이상이면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해야 된다.

이 있다. 이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광진흥법에 의해 회원을 모집하며 회원을 관리한다. 즉 회원의 정보에 대해 담당행정기관에 행정자료는 없지만 각 시설물사업자는 위 법 규정에 따라 회원들에게 회원증을 발부하고 회원명부 또는 회원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골프회원권의 경우에는 국세청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2월과 8월 연 2회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발표하고 있다. 2006년 2월 기준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148개 골프장 287개 회원권에 대해 고시하였다. 기준시가는 전국의 주요 골프회원권 거래소의 거래실례가액과 골프장의 분양가액, 인터넷 시세자료 등을 확인하여 거래시가의 90~95% 수준으로 기준시가를 정했다.

종합체육시설이용권과 콘도미니엄회원권의 기준시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또는 권리를 반환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종합체육시설이용권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를 위한 시가표준액을 각 종합체육시설의 회원권 종류별로 고시하고 있다. 시가표준액은 분양가 또는 시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금액의 90% 수준이다.

9. 광업권(조광권)

광업법으로 광업권 설정없이 미채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는데, 광업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의미하며 조광권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광업권의 목적으로 되어있는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광업권의 설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출원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하며, 조광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조광권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광업권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광업출원인이 광업권설정의 허가통지서를 받은 때 또는 조광권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조광권설정의 허가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광

38) 승마회원권은 2006년부터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포함

업원부 또는 조광원부에 등재한다. 2005년 현재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는 5,265개이다.

광업권의 기준시가는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가액에서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세 법상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제외한 가격으로 평가하고 자기창설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액을 미래 채굴가능연수로 할인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광업권은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대상으로 시가표준액은 광구의 광물 매장량, 광물의 톤당 순수입가격, 광업권 설정비, 광산시설비 및 인근 광구의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서 당해 광산의 기계 및 시설취득비, 기계설비이전비 등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10.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이 있으며 이들은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에 등재한다. 산업재산권은 등록세 과세대상이나 등록건당 정액세로 시가표준액 자료는 없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 대상으로 기준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은 재산권을 통해 얻은 수입이나 얻을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11. 저작권

저작권은 각 해당 등록부에서 권리를 등록할 수 있는데 저작권 등록 대상은 저작물,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및 저작물의 출판이다.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4, 5, 6조에 의하면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편집저작물 및 2차적 저작물로 등록하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제외하고는 저작권등록부에 등재하고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프로그램등록부에 등재한다. 저작인접물이란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물의 구현과 제작에 따르는 일정한 노력에 대한 권리로 저작권법에서는 실연, 음반, 방송 3가지 분야에 대해 저작인접권을 인정하여 등록하면 저작인접권등록부에 권리가 등재된다.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에 등재하게 하며, 저작물을 원

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 자는 출판권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 등록내용은 저작권법 제51조에 의하면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이명, 국적, 주소 또는 거소, 저작물의 제호, 종류, 창작연월일, 공표의 여부 및 공표된 국가, 공표연월일 등이다. 2006년 8월말 현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제외한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저작권의 등록실적은 43,194건이다.

저작권은 등록세 과세 대상이나 등록건당 정액세로 시가표준액 자료는 없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 대상으로 기준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은 저작권을 통해 얻은 수입이나 얻을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12. 어업권

어업권이란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로 수산업법에서 규정하는 면허어업으로는 정치망어업, 해조류 양식어업, 패류 양식어업, 어류 등 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마을어업이 있으며, 내수면어업법에서 규정하는 면허어업으로는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조류채취어업이 있다. 면허받은 어업권에 대해 시장, 군수는 어업권원부에 등재하는데 어업권원부(어업권등록부)에는 면허번호, 어업권의 표시, 제한 또는 조건, 어업권의 존속기간, 어업권의 변동 및 어업권의 설정, 소멸, 회복 이전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갑구사항란) 등을 기재한다.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대상인 어업권의 시가표준액은 인근 동종 어장의 거래가격에서 어구설치비와 양식물의 종패 및 치어대 값을 제외한 가격으로 정한다. 인근 동종어장의 매매실례가격은 시장, 군수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어장의 지역별, 종별, 양식방법별 형성가격을 조사 결정한다. 당해어장의 어구설치비는 동종어장의 시설어구 시장조사액을 면허기간, 연장기간, 경과년수 등을 고려하여 조정된 비용이다.

13. 영업권[개인택시]

영업권이란 '93SNA에 의하면 현재 영업중인 기업에 대한 지불가치와 동기업의 순자산가액과의 차이를 의미하는데,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매도할 때

받는 권리금 등이 이런 종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업종류가 다양하며 지불가치도 다양하여 일반적으로 사업종류별로 이를 정형화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만, 가계자산의 사례로 개인택시 면허는 추계할 수 있다.

개인택시는 개인만이 운영할 수 있는 운송 사업이며 면허제로 소유주에 대한 정보가 분명한데, 자동차등록에서 영업용 자동차 중 개인택시는 구분 등록하기 때문에 개인택시의 소유자, 소유자의 거주지, 영업지역, 자동차의 형식 및 연식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부록6>과 같이 개인택시 소유자 주소지 및 사용본거지 통계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사용본거지 각 개인택시 대수의 합과 해당지역 개인택시 면허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곱하면 개인택시 영업권에 대한 자산추계가 가능하다.

V. 자산 소유주의 식별

각종 자산의 등록(등기)대장에는 소유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와 같은 소유주의 고유번호들이 있는데 이들을 식별코드라고 한다. 자산 소유주의 특성에 따라 자산을 개인(가구)자산, 법인자산 또는 정부자산과 같이 분류할 때 소유주 이름보다는 이들 식별코드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간편하고 정확하다. 그러나 이들 식별코드들은 코드만 보았을 때 <도표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재외국민등록번호,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번호, 재외국민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종중등록번호가 13자리로 모두 같고,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번호는 10자리로 같은데 겉모양만으로 이들을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을 구분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한데 이들 작업과정이 복잡하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도 완전한 식별은 어렵다.

검증과정이 동일한 등록번호들도 있지만 등록번호들의 구분을 위해 비교적 정확한 방법은 이들 식별코드들의 마지막 자리에는 모두 검증코드 또는 오류검색번호라고 부르는 번호들이 있는데 이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등록건수가 많은 자산의 경우 전산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주민등록번호의 13번째 자리 숫자는 주민등록번호 각 자리에 2, 3, 4, 5, 6, 7, 8, 9, 2, 3, 4, 5를 곱하여 더한 수를 11로 나누어 남은 나머지를 11에서 뺀 수이다. 법인등록번호, 재외국민등록번호, 종중등록번호의 13번째 자리 숫자는 등록번호 각 자리에 1, 2, 1, 2, 1, 2, 1, 2, 1, 2, 1, 2를 곱하여 더한 수를 10으로 나누어 남은 나머지를 10에서 뺀 수이다. 외국인등록번호와 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의 거소신고번호는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와 검증코드 산출방법이 다르며 12번째 자리 숫자를 통해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번호, 재외국민거소신고번호 각각의 구분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등록번호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들의 검증코드를 비교해 보면 종교단체등록번호는 등록번호 각 자리에 2, 1, 2, 1, 2, 1, 2, 1, 2를 곱하여 더한 수를 10으로 나누어 남은 나머지를 10에서 뺀 수로 사업자등록번호의 검증코드 산출방법³⁹⁾과 다르다.

39)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 검증코드는 사무업무편람에만 설명되어 있고 공개된 법규 등에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다.

<도표8> 식별코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주민 등록 번호	출생년도		출생 월		출생일		성별	출생신고지역코드			일련 번호	검증 코드	13자리	
	00~99		01~12		01~31		1,2 3,4							
법인 등록 번호	등기관서별 분류			법인종류			일련번호					검증 코드	13자리	
	11~28		01~63		11~85									
재외 국민 등록 번호	출생년도		출생 월		출생일		성별	일련 번호			검증 코드	13자리		
	00~99		01~12		01~31		3,4							
중증	성, 본관고유번호					지역번호			일련번호		검증 코드	13자리		
	1~3	0~9	0~9	0~9	0~9	0~9								
외국 국적 동포※	출생년도		출생 월		출생일		성별	등록기관번호		일련번호	등록자 구분	검증 코드	13자리	
	00~99		01~12		01~31		5,6 7,8				7			
재외 국민※	출생년도		출생 월		출생일		성별	등록기관번호		일련번호	등록자 구분	검증 코드	13자리	
	00~99		01~12		01~31		5,6 7,8				8			
순수 외국인 등록 번호	출생년도		출생 월		출생일		성별	등록기관번호		일련번호	등록자 구분	검증 코드	13자리	
	00~99		01~12		01~31		5,6 7,8				9			
종교 단체	지역번호				종교 구분	일련번호				검증 코드	X		10자리	
					1,2,3 ,4,9									
법인 아닌 기타 단체	지역번호				일련번호				검증 코드	X		9자리		
사업자 등록 번호	지방청	세무관서명		사업종류		일련번호				검증 코드	X		10자리	
				01~99										

※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의 거소신고번호

따라서 검증코드를 이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번호, 재외국민거소신고번호, 순수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법인이 아닌 기타단체, 사업자등록번호는 각각 구별되며, 이들과 법인등록번호, 재외국민등록번호, 종중이 구별되지만 법인등록번호, 재외국민등록번호, 종중 각각이 구별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식별과정을 고려해야 된다.

내국인 개인(가구)의 자산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중 개인사업자의 등록번호만을 구분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재외국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종중등록번호 등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1차 조건으로 7번째 숫자가 1, 2, 3, 4인 것만을 추출한다. 주민등록번호의 성별구분인 7번째의 숫자는 1, 2, 3, 4만⁴⁰⁾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차 조건에 의해 추출된 자료에서 2차 조건으로 출생 월을 의미하는 3~4번째 숫자가 01~12인 자료만을 재추출 한다. 2차 조건에 의해 추출한 자료를 대상으로 3차 조건으로 출생일을 의미하는 5~6번째 숫자가 01~31인 자료만을 추출하고 마지막 4차 조건으로 주민등록번호 검증코드 산출방법으로 내국인을 식별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등록번호와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번호 4~5번째 자리의 숫자가 80~89가 아닌 등록번호들에(도표9 참조) 대해서만 사업자등록번호 검증코드 산출방법을 이용하여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를 구분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등을 포함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위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재외국민등록번호로 등록된 자산과 종중 및 법인자산을 얼마나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40)1800년대 출생자는 9와 0번을 사용했지만 100세가 넘는 이들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도표9> 사업종류별 사업자등록번호

번호	사업종류
01~79	개인사업자중 과세사업자
80	기타 원천징수만 있는 비사업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81	영리법인의 본점
82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8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84	외국법인의 본사 및 지점
85~87	영리법인의 지점
89	법인아닌 종교단체
90~99	개인사업자중 면세사업자

VI. 문제점 및 향후과제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자산을 추계하는 경우 등록자료 등을 이용하여 자산추계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으며 따라서 이들 향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주택은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기준시가가 60~80% 정도로 많이 향상되었지만, 정부의 각 자산에 대한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자료는 자동차의 시가표준액과 중고자동차 시세를 비교했을 때 보았듯이 시장가격보다 낮게 자산들을 평가하고 있다. 즉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은 시장가격을 대표하기 보다는 각 자산에 대한 최저평가액을 제시하는 특성이 있다.

둘째, 통계청이 관련 행정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담당기관이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문제와 행정정보를 통계로 이용하는데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자료제공에 소극적이다.

셋째, 각 자산의 등록대장을 이용한 자산추계는 개인에 대한 자산추계만 가능하며, 가족이나 가구에 대한 자산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호적이나 주민등록과의 연계가 필요하나 이들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외국과 우리나라의 가구 또는 세대와 가족에 대한 정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통계단위로서 가족이나 가구 또는 세대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명한 정의와 이 정의를 기초로 주민등록자료가 얼마나 이들 정의에 일치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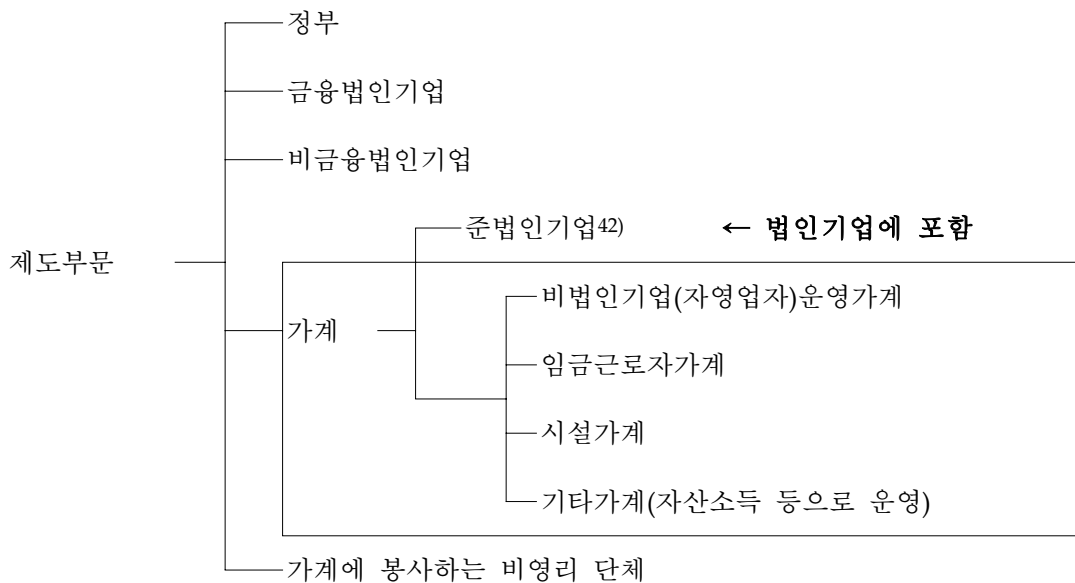
넷째,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이용하여 만든 통계표(부록7,8 참조)와 같이 등록대장의 소유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통해 연령별, 성별, 지역별 분류는 가능하지만 등록대장만으로 학력별, 종사상지위별(직업별), 소득별, 가족(가구) 형태별 등과 같은 인구특성별 통계작성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특성들을 고려한 통계작성을 위해서는 노르웨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다른 행정자료들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행정서식은 원래 통계 이용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상 필요한 내용만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식에서 이들 정보의 기입란 위치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등록대장이 개인의 이름과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와 법인등록번호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 위치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가 13자리로 같아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들 식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93SNA에서는 비법인중 기업과 가계의 회계가 별도 처리되는 준법인기업은 법인기업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법인등록 하지 않은 준법인기업을 법인등록번호만으로 가계와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GRDP추계에서는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기장의무자⁴¹⁾를 준법인기업으로 정의하고 이들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들 사업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모르면 행정자료에서 이들의 사업자산을 구분하기 어렵다.

<도표10> 제도부문별 분류



41)복식부기 기장의무자는 연간수입액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산업구분	연간수입액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도매업, 소매업, 광업, 임업, 어업, 축산업, 부동산매매업, 산림소득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운수통신업, 창고업, 금융보험업	1억5천만원 미만	1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7천5백만원 미만	7천5백만원 이상

42)준법인기업이란 마치 법인기업인 것처럼 기능을 수행하는 비법인기업, 즉 동 기업과 소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자산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계청이 행정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전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며 가계자산 추계만을 위한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사전조건에는 법률적 기반, 국민의 승인, 관련기관사이의 협력, 동일한 식별코드, 포괄적이고 믿을 만한 시스템의 구축 등이 있다.

첫째, 국세청은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로 과세자료를 각 기관이 세무서에 제출할 내용과 제공 주기 등을 법제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국세청에 자료제출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다. 국세청의 이런 법제화 사례 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통계청이 행정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체 법률을 만들고 관련 법률에도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국민들은 개인정보공개에 민감하지만 국민들의 응답부담 감소, 예산 절약, 개인정보침해가 아니라는 인식 등을 확산시켜 행정정보의 통계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핀란드가 인구총조사를 직접 조사에서 행정정보를 이용한 간접 방법으로 전환하여 2003년 화폐가치로 직접 조사한 1980년 인구센서스 비용은 35백만 유로였으나 행정정보를 이용한 2000년 최근 센서스는 1백만 유로보다 적은 비용이 소요되었다. 또한 핀란드 통계청은 행정자료의 이용이 통계 데이터에 접근하는 사람의 수가 전통적인 자료 수집에서보다 훨씬 적어서 개인정보의 노출측면에서 오히려 우수하다고 주장한다. 직접 조사방법으로 인구센서스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표가 350개 지역 사무실에 몇 달 동안 배포되어 있으며 약 2,200명의 임시직들이 이들 조사표의 처리에 종사하면서 그들은 그들 이웃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은 기계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핀란드 통계청에 와서 컴퓨터이외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등록 자료보다 자료보호의 높은 기준을 유지하기가 훨씬 더 어렵고 주장한다. 또한 수마일 거리의 보관소들이 전국에 퍼져있는 것보다 마그네틱 테이프, 카세트 또는 하드디스크 데이터파일에

유주와의 관계는 법인기업과 주주와의 관계와 같아서 기업 자체의 부가가치, 저축, 자산, 부채 등에 대한 회계기록이 있어야 하며 기업과 소유주간의 소득과 자본 flow가 기록 가능해야 된다.(4.49~4.52)

기록하는 것이 훨씬 개인정보가 보호된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사례들을 관련 기관과 국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통계청은 국민들로부터 행정정보를 통계로 사용하는데 대한 국민들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관련기관들에게 통계법을 이용하여 규제하려고 하기보다 담당기관과 정기적인 상호 모임과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이런 상호 교류를 통해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통계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관련기관들에게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함으로써 행정자료의 정확성을 더 높일 수 있으며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통계청이 행정자료를 이용하는데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기가 더 쉽다.

넷째,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식별코드는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기타 코드들의 규격화를 통해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작성에서 동일한 특성이 여러 개 집계되는 불필요한 경우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등록의 경우 자동차회사, 자동차명 등은 직접 입력하지 않고 예시 항목 중 선택 입력하는 방식으로 코드 규격화가 필요하다. 자동차등록에서 자동차명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엑센트, 악센트, 엑센트 등 다양한 표기로 입력되지만 표준 자동차명을 엑센트로 정하고 이를 사전에 예시된 항목에서 선택 입력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규격화하면 엑센트 자동차 종류를 3가지가 아니라 1가지로 집계할 수 있다.

다섯째,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보훈, 병무, 법 등 8개 분야 34종의 행정정보를 공무원 및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직접 전자적으로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행정기관에서 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관련서류를 떼어 활용하는 불편을 없애고자 하는 목적이다. 통계청은 이 행정정보공유시스템으로부터 행정자료를 직접 입수할 수 있거나 기타 각종 행정자료 관련 시스템으로부터 행정자료를 직접 입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행정정보공유시스템으로부터 입수할 수 있는 행정자료의 종류를 증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자료가 시장가격보다 낮지만 행정자료는 전수집계

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므로 각 자산들에 대한 행정자료를 이용한 자산 추계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물론 행정자료를 이용한 가계자산의 추계를 위해서는 위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자산을 추계하려고 시도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주어진 현실에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산추계를 시도하면서 동시에 제기된 문제들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가계자산의 추계가 어렵다면 우선 개인 자산에 대한 추계를 시도하면서 주민등록이나 호적 자료와의 연계를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가계자산을 추계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관련기관의 개인별 자료 제공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선 관련부처에 통계표를 제시하고 관련 자료의 집계를 의뢰하는 방법을 사용하다 2단계로 개인자료에 대한 표본 dataset을 입수하고 최종에는 통계청이 개인자료 전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자료 시스템과 연결된 통계청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국단위의 가계자산추계를 위해 자산의 분포나 규모에 관심이 적은 행정자료 주관 부처들에게 행정정보 이용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보다는 1개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관련 지역의 자산관련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그 지역의 자산을 추계,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에 이용하도록 제공하면서 가계자산추계 경험을 쌓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참고 문헌

- [1] 국세청 법무심사국 법무과(2004.3),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 [2] 박소현(2005), 『가계자산 조사방법 연구』, 통계청 통계연구보고서 05-02
- [3] 법제처 법령통합검색, <http://www.moleg.go.kr>
- [4] 보험개발원, http://www.kidi.or.kr/plaza/plaza_d_02.asp
- [5] 서천군 세우회, <http://easytax.or.kr>
- [6] 통계청(2005.11), 『200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지침서 표본조사용(종합편)』
- [7] 통계청(2006.), 『행정자료를 이용한 센서스 수행방법 연구』, 팀제훈련 결과보고서
- [8] 한국은행(1997), 『1993국민계정체계(상)』
- [9]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6549.0-Household Income, Consumption, Saving and Wealth, A Provisional Framework, 1995"
- [10] Expert Group on Household Income Statistics(The Canberra group, 2001), "Final Report and Recommendations"
- [11] Harald Utne(2005.2), 『Th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Handbook 2001』, Statistics Norway Department of Social Statistics
- [12] Statistics Canada, <http://www.statcan.ca/english/concepts/stat-unit-def.htm>
- [13] Statistics Finland(2005), 『Statistics of Income and Property 2003』
- [14] Statistics Finland(2004), 『Use of Register and Administrative Data Sources for Statistical Purposes-Best Practices of Statistics Finland』
- [15] Statistics Finland, http://www.stat.fi/meta/til/tvt_en.html?tulostat

- [16] Statistics Norway(2004), "Income and Property Statistics for Households 2002"
- [17] Statistics Norway, <http://www.ssb.no/english/subjects/05/01/>
- [18] United Nations(1997),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fo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Revision 1"

<부 록>

<부록1> Income unit, 가족(family), 가구(household) 정의

	SNA	UN 인구센서스 권고안	소득통계전문가 (캔버라)회의	호주	캐나다
Income unit	-	-	- 공유되는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가구 내 개인이나 친척집단	- 개인이나 한 가구 내 소득에 대한 소유권이 공동인 친척 - 친척관계는 결혼이나 같은 가구내 거주하는 부모-부양자녀로 제한	-
가족	-	- 혈연, 입양 또는 결혼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 친척관계에 있는 가구 구성원 - 적어도 2인 이상으로 구성		- 함께 사는 2명 이상의 친척으로 구성 - 이들 중 1명이 적어도 15세 이상이며 같은 가구 내에 거주	
· 협의 개념	-	<family nucleus> - 자녀의 나이에 관계없이 결혼하지 않은 자녀와 부모로 형성	<nuclear families> - 1개의 거처를 공유하는 부모와 결혼하지 않은 자녀로 구성 - 자녀의 연령을 제한하기도 함		<Census family> - 1개의 거처를 공유하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 - 자녀의 나이나 결혼상태에 관계없이 그들의 배우자나 자녀가 같은 거처에 살지 않는 자녀는 가족 구성원

	SNA	UN 인구센서스 권고안	소득통계전문가 (캐버라)회의	호주	캐나다
· 광의 개념	-	- 협의의 가족을 포함한 그 밖의 가족형태	<economic families> - 1개의 거처를 공유 하는 혈연, 결혼 또는 입양으로 연관된 모든 사람 - 가족중 1명의 연령 이 최소한 15~16세		<Economic family> - 같은 거처에 살면서 혈연, 결혼, 관습상 또 는 입양으로 서로 관 련된 2명 이상으로 구 성된 집단
가구	- 동일한 주거시설을 사 용하고 소득과 부의 일 부 또는 전부를 공유하 며 주로 주거와 음식을 집합소비하는 소규모 개인집단 - 가구구성원은 가구 공 동자원에 대해 어느 정 도 청구권을 가짐	<housekeeping> - 음식이나 기타 필수요 소들을 가구원들 스스로 준비하고 그들의 소득을 공유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공동의 생활비를 가짐 <house-dwelling> - 1개의 housing unit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구 성	<광의> - 1개의 거처를 공유 하는 사람들 <협의> - 1개의 거처를 공유 하면서 함께 취사하는 사람들	- 함께 거주하고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의 집 단 - 가구원들이 소득을 공유할 수는 있지만 가구정의의 필수 기준 은 아님	- 같은 거처를 공유하 고 캐나다나 해외에 그 밖의 일상적인 거 주 장소를 가지지 않 는 사람이나 사람들의 집단

<부록2>자산종류

	SNA		한국
비금융자산 I (생산자산)	주거용 건물	전적으로 또는 주로 주거시설로 사용되는 건물로서 부속된 건축물(차고)과 주거시설 내에 관례적으로 설치되는 모든 영구 고정시설 포함, 가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선박, 차량, 이동식 주택, 조립식 주택 및 군사목적의 주거용 건물도 포함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고급연립)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지상권
	비주거용 건물	주거용 건물이외의 건물(창고, 공업용 건물, 상업용 건물, 공연장, 호텔, 식당, 학교, 체육관 등)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 부속시설물(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기타승강시설, 20Kw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 욕탕용 보일러, 7560Kcal급 이상의 에어컨,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구내의 변전, 배전시설) 시설물(레저, 저장, 도크, 접안, 도관, 급배수, 에너지공급 시설)
	기타건축물	건물을 제외한 건축물(도로, 하수도, 철도, 공항 활주로, 교량, 터널, 수로, 항만, 댐, 통신선, 송전선, 파이프라인 등)	-
	운수장비	자동차, 트레일러, 선박, 기관차, 철도차량, 항공기, 우주선, 오토바이, 자전거	자동차, 트레일러, 선박, 항공기, 오토바이, 자전거
	기타기계 및 장비	기계, 사무회계 및 계산용 장비, 전기기구, 라디오, TV, 통신기기, 의료정밀기기, 가구, 악기, 스포츠용품, 원자로용 연료용기,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 난방기기	건설기계장비 30종
	가축 (육성자산)	제도단위의 직접적인 통제, 책임 및 관리 하에 반복적으로 산출물을 생산하는 가축(젓소, 양, 번식용 가축, 수송, 경주 또는 오락용 동물)	종돈, 종계, 젓소
	과수 (육성자산)	제도단위의 직접적인 통제, 책임 및 관리 하에 반복적으로 산출물을 생산나무(과일, 견과, 액즙, 수지, 껍질, 잎 등을 산출)	과수(총17종)
	광물탐사	석유, 천연가스 및 비석유 매장물을 탐사하기 위한 지출액	

	SNA		한국
비금융자산 I (생산자산)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및 응용소프트웨어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프로그램 설명서 및 보조자료, 소프트웨어의 구입 및 자가 사용을 위한 자체개발을 모두 포함하며 1년 이상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의 구입, 개발 또는 확장도 금액이 큰 경우 포함	저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프로그램저작권)
	오락, 문화 또는 예술품 원본	연극공연,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뮤지컬 공연, 스포츠 행사, 문학 및 예술작품 등이 기록 또는 체화된 원본 필름, 음반, 원고, 테이프 등, 자가계정으로 생산된 것도 포함	저작권(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저작인접권(실연, 음반, 방송), 출판권
	기타 무형 고정자산	새로운 정보, 전문지식 등으로서 이를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소유권을 보유한 제도단위로부터 사용권을 부여 받아야 하는 자산	
	원재료 및 소모품	소유자가 이를 재판매하지 않고 자신의 생산과정에 중간투입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재화	원재료
	육성자산의 재공품	1번의 도축이나 벌목으로 생산되는 가축 및 나무와 같은 자산이나 완전히 자라지 않은 육성자산의 재공품	임목(총18종), 죽림, 소, 돼지, 닭, 오리
	기타재공품	생산자에 의해 부분적으로 처리, 제조 또는 조립되었으나 보통의 경우 추가적인 가공 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재화 및 서비스	반제품, 재공품, 제조중인 제품
	완성품 재고	생산자가 바로 판매 또는 선적할 수 있는 재화	상품, 제품
	재판매용 재화	도소매상과 같은 기업이 추가적인 가공 없이 재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	판매용 상품
	귀금속 골동품 및 기타예술품		판매용, 비판매용
	기타귀중품	귀금속이나 보석을 가공하여 상당한 가치를 지니게 된 장신구 및 수집품 등	총포, 도검

	SNA		한국
비금융자산Ⅱ (비생산자산)	토지	소유권이 행사되고 있는 지면으로 그 지표상의 토양과 지표수를 포함	토지
	지표수		
	지하자산	지표면 또는 지하에 위치하는 광물로서 현재의 기술과 상대가격 하에서 경제적으로 채굴이 가능한 확인 매장량, 석탄, 석유, 천연가스, 금속광물, 비금속광물을 포함	
	비육성 생물 자원	소유권이 행사되고 있으나 자연적인 성장 및 번식은 제도단위의 직접적인 통제, 책임, 관리 하에 있지 않은 동물 및 식물, 산출물을 1번 생산하거나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모든 경우 포함, 경제적 목적을 위해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채취가 가능한 자원만 포함	
	지하수자원	대수층 또는 기타 지하수자원 중에서 그 희소가치로 인해 소유권 및 사용권의 행사와 시장평가가 가능하고 경제적 통제수단이 있는 것	먹는샘물
	특허권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특허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발명	특허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임대차권 및 기타 양도 가능한 계약	임차인이 임대인과 무관하게 임대 계약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임대차권 또는 계약(토지 및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임대차권, 광물 광상의 채굴 또는 어장 이용에 관한 독점권, 운동선수 및 작가와의 양도 가능한 계약, 아직 생산되지 않은 유형자산을 구입하기 위한 옵션 계약 등)	광업권, 조광권, 어업권, 입어권,
	영업권	현재 영업중인 기업에 대한 지불가치와 동 기업이 보유한 자산, 부채의 각 항목을 개별적으로 인식, 평가하여 합산한 순자산가액(=자산총액-부채총액)과의 차이	영업권(개인택시, 개인,개별화물)
기타 무형 비생산자산			

	SNA		한국
금융자산	화폐용 금 및 특별 인출권	통화당국 등이 금융자산 또는 외화준비의 일부로 보유하고 있는 금과 SDR은 IMF에 의해 창출된 국제준비자산으로 기존의 준비자산을 보충하기 위해 회원국들에 배분	-
	현금통화 및 예금	현금통화, 통화성예금 및 기타예금(양도불능 저축예금, 정기예금 및 양도불능 외화표시예금, 조합 발행주식 및 유사 예금증서, 옵션 또는 선물계약의 증거금, 광의 통화에 포함되는 익익물 또는 초단기 RP)	
	주식이외 증권	금융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며 보유자가 특정일에 일정금액 또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 가변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진 금융자산(장단기 채권, 양도성 예금 증서, BA, CP, 양도가능한 대출담보증권, 기타자산담보증권, 전환사채)	
	대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자금을 대출할 때 창출되는 금융자산으로 양도가 불가능한 서류에 의해 증명되거나 대출자가 거래를 증명하는 아무런 증권도 받지 못한 자산(할부대출, 할부구매신용, 금융리스 및 이와 유사한 계약, 광의 통화에 포함되지 않는 RP)	예금, 저금, 적금 국공채 주식(신주인수권증서 포함) 출자지분(전환사채 포함) 기타유가증권(증권투자신탁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 및 기타지분	모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지급이 완료된 후 법인기업의 잔여자산에 대한 채권을 나타내는 금융자산(우선주 포함), 지분 소유권은 일반적으로 주식, 지분증서, 자본참여 또는 그와 유사한 문서로 증명	
	보험준비금	보험회사에 의해 보유, 관리되거나 실제로는 미래의 보험금 청구에 대비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혜자를 위해 위탁된 것으로 피보험자의 자산	
	기타수취채권 및 지급채무	직접 제공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기업 간 신용, 진행 중 또는 착공예정인 사업에 대한 전도금, 기타수취예정항목 및 지급예정 항목(조세, 배당금, 증권의 구입 및 매각, 임대료, 급여, 사회부담금 등)	

<부록3> 자산별 주요 등기(등록)

자산		관계법령	등기(등록) 대장명	담당기관	비고
부동산	토지	지적법	토지대장, 토지등기부 임야대장	소관청, 법원	
	주택 및 건물	건축법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시,군,구, 법원	
	기타시설물 및 부속물	건축법			
	지상권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	법원	
	아파트당첨권, 분양권				
자동차(이륜차, 트레일러 포함)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등록사업소	
선박	선박	선박법	선박원부(일정규모이상) 선적증서원부(소형선박)	지방해양수산청	
		선박등기법	선박등기부	지방법원, 동지 원 또는 등기소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 만 대상
	어선	어선법	어선원부	시, 군, 구청	선박 중 어선만 대상
항공기		항공법 항공기등록법	항공기등록원부	항공안전본부	
기계장비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등록원부	시, 도	
나무	입목(과수, 임목, 죽림)	입목에 관한 법률	입목등록원부	시, 군	
가축	소, 돼지	축산법	가축사육업등록대장	시, 군	
	기타(종돈, 종계, 젓소, 닭, 오리)	축산법	가축사육업등록대장	시, 군	
특정시설물 이용권	콘도미니엄회원권	관광진흥법	공유자 및 회원명부	관광사업자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체육시설설치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회원관리대장	사업자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광업권	광업권	광업법	광업원부	광업등록사무소	
	조광권		조광원부		

자산		관계법령	등기(등록) 대장명	담당기관	비고
산업적 재산권	특허권	특허법 특허등록령	특허(등록)원부	특허청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등록령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청	
	상표권	상표법 상표등록령	상표(등록)원부	특허청	
	의장권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등록령	디자인(등록)원부	특허청	
저작권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등록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출판권		출판권등록부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등록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등록부		
	프로그램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프로그램등록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명칭 변경 예정
채석권					
어업권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업권원부	시,군,구		
입어권					
영업권	개인택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인(개별)화물	화물법자동차운수사업			
골동품 및 예술품	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국가지정문화재대장	문화재청 시,군,구	문화재매매장부(문화재매매업자, 시, 군, 구)
	등록문화재		등록문화재대장		
	시도지정문화재				
기타귀중품	총포, 도검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경찰서	
금융자산					

<부록4>자산별 가치평가방법

자산		평가방법	
		상속세(기준시가)	지방세(시가표준액)
부동산	토지	<개별공시지가> · 당해토지와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산정	좌동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주상복합포함)]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 토지가격 포함 · 공동주택가격: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 · 개별주택가격: 당해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 산정	좌동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기준시가> · 토지가격 포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대상) · 단위면적당 가격 고시 · 상업용건물: 3381동, 309,385호 · 오피스텔: 2427동, 254,797호 ·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	<건물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면적×가감산특례 · 시가표준액의 지수와 잔가율 등이 기준시가의 지수 및 잔가율 등과 다름
	건물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 건물가격만 평가 · 기준시가=단위 면적당가격×평가대상건물의 면적 · 단위면적당가격=건물신축가격기준액(47만원)×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아파트당첨권, 분양권	· 평가기준일까지불입한 금액+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

자산		평가방법	
		상속세(기준시가)	지방세(시가표준액)
부동산	기타 시설물 및 부속물	①순위: 재취득가액(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 소요되는 가액-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②순위: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 또는 건축물은 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 평가한 것으로 간주	· 기준가격×잔가율
	지상권	· 평가액=각 연도의 수입금액/(1+0.1) ⁿ n은 평가기준일부서의 경과연수	-
자동차(이륜차, 트레일러 포함)		①순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 시가표준액=해당자동차기준가격표×해당자동차의 경과연수별 잔가율
선박		②순위: 장부가액 ③순위: 시가표준액	
항공기			· 시가표준액=해당항공기기준가격표×내용연수에 따른 경과연수별 잔가율
기계 장비	건설기계		· 시가표준액=해당 기계장비 기준가격×해당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가율
나무	입 목 (과 수, 임목, 죽림)		· 수종, 수령, 지역별로 세분하고 입지에 따라 상, 하로 구분하여 시가조사 m ³ 당 가격으로 표시
가축	소, 돼지	· 처분시 취득 예상가액	· 연 2회 시,군, 구에서 소 500kg, 돼지 100kg단위로 도축세 과세표준액을 결정 고시
	기타		

자산		평가방법	
		상속세(기준시가)	지방세(시가표준액)
특정 시설물 이용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	
	승마회원권	· 권리를 반환한 경우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	
	종합체육시 설이용권		· 분양가 또는 시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금액의 90% · 업소별, 회원권 종류별로 지정
	골프회원권	· 148개 골프장, 287개 회원권 · 조사된 거래시가의 90~95%반영 · 주요 골프회원권 거래소의 거래실례가액, 골프장 법인의 분양가격, 인터넷시세 등을 참조 · 연 2회(2, 8월) 고시	
광업권	· 매입한 경우: 매입가액(부대비용 포함)-평가기준일 까지 법인세법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자기창설: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액/(1.01) ⁿ n:평가기준일부터 채굴가능연수	①정상적으로 생산 중에 휴업한 광산과 조업 중인 광산으로서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가채광량을 알 수 있을 때) · 조사가격=[톤당 순수입가격×매장량-(기계 및 시설 비+기계설비이전비)]×0.5 ②탐광단계에 있으나 광물의 생산량이 없거나 채광 미착수 광산인 경우로서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인근광구의 거래가격을 알 수 없을 때) · 조사가격=[(광업권설정비+시설비)+(매장량×톤당순 수입가격)-(기계설비이전비+기계 및 시설비)]×0.5 ③인근광구의 거래가격을 알 수 있을 때 · 조사가격=[인근광구의 비준가격-(기계 및 시설비+ 기계설비이전비)]×0.5	

자산		상속세(기준시가) 평가방법
산업적 재산권	특허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한 경우: 매입가액(부대비용 포함)-평가기준일까지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자기창설 ①장래에 받을 수입금액이 확정된 경우: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재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②장래에 받을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의 평균액/(1+0.1) ⁿ n: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일수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저작권	①장래에 받을 수입금액이 확정된 경우: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재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②장래에 받을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의 평균액/(1+0.1) ⁿ n: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일수
	출판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프로그램 저작권	
채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한 경우: 매입가액(부대비용 포함)-평가기준일까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자기창설: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액/(1.01)ⁿ n:평가기준일부터 채굴가능연수	
골동품 및 예술품	판매용이 아닌 경우	· 전문분야별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판매용	·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영업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한 경우: 매입가액(부대비용 포함)-평가기준일까지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자기 창설: 영업권 평가액={최근 3년간 순손익의 가중 평균액×50%-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재경부령이 정하는 율}×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원권 지속연수(원칙 5년)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등	· 그것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재취득가액)	
제조중인 제품	· 재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장부가액	
미착상품	· 평가기준일 현재 완성된 부분에 대한 완성비율에 따라 평가	
	· 상속개시일까지 당해 상품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	

자산		상속세(기준시가) 평가방법
예금, 저금, 적금		·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원천징수세액
주식 및 출자 지분	상장주식 출자지분	·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간 공표된 매일 한국증권거래소최종시세가액의 평균
	미상장주식	· 상장되어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에 대해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배당차액[1주당 액면가액×직전기 배당률×{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배당기일 전일까지의 일수/365}]
	상장추진중인 주식	·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액과 상속세법에 따라 규정 평가한 가액
	협회등록법인 주식	·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가액
	비상장주식	·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는 3: 2의 비율로 가중평균) ·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순손익가치환율을 · 순자산가치=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신주인수권 증서	· 증서를 발행한 법인의 증자전 1주당 가액-배당차액-신주 인수에 따른 주금납입액
	전환사채	·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평가일전 2개월 평균값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일의 최종시세 가액 · 전환금지기간 중(사채로서 평가): 발행일 기준 만기상환액을 발행이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발행 후 현재까지 발행이자액 · 전환가능기간 중: 전환금지기간중의 평가액과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의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금액
국공채 등 기타 유가 증권	상장된 국공 채	·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2개월간 공표된 매일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 가액 중 큰 가액
	상장되지 아 니한 국공채	①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매입가액에 의하여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②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 ③상환기간, 이자율, 이자지급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
	증권투자신탁 증권	·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증권거래소 기준가격
	신주인수권부 사채	·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을 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 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부록5>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

기아자동차 오피러스 3.0GH 2006년 10월 기준가액

형식	세분	배기량	정원	전산번호	연도												
					2006A	2006B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LDN33A	GH300 고급형, 오토, ABS, AIR-D	@ &	2972	5	11B01	3791	3055	2579	2130	1838	0	0	0	0	0	0	0
LDN33A	GH300 하이오너형, 오토, ABS, AIR-D, IM(04.4.22~)	@ &	2972	5	11B02	3828	3100	2676	2247	1970	0	0	0	0	0	0	0
LDN33A	GH300 최고급형, 오토, ABS, AIR-D	@ &	2972	5	11B03	4144	3340	2863	2299	2002	0	0	0	0	0	0	0
LDN33A	GH300 최고급형 세이프티, 오토, ABS, AIR-D, IM	@ &	2972	5	11C42	4209	3430	2962	2434	0	0	0	0	0	0	0	0
LDN33A	GH300 고급럭셔리형, 오토, ABS, AIR-D, IM	@ &	2972	5	11D25	4021	3265	2762	0	0	0	0	0	0	0	0	0
LDN33A	GH300 최고급프리미엄형, 오토, ABS, AIR-D, IM	@ &	2972	5	11D26	4574	3721	3228	0	0	0	0	0	0	0	0	0

<부록6> 개인택시 소유자 주소지와 사용본거지 통계표

주소지 \ 사용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			제주도			
								수원시	~	양평군	춘천시	~	양양군	~	~	~	제주시	~	남제주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수원시																			
	∫																			
	양평군																			
강원도	춘천시																			
	∫																			
	양양군																			
∫	∫																			
	∫																			
	∫																			
제주도	제주시																			
	∫																			
	남제주군																			

<부록7> 비사업용 개인용 자동차 등록대수 통계표

비사업용 개인용					연식					
지역(시·도)	성별	연령별	차명	형식	2006	2005	2004	~	~	1980
총계										
서울	남자	19세 이하	베르나							
			소나타							
	남자	20세 이상~29세 이하								
		30세 이상~39세 이하								
		40세 이상~49세 이하								
		50세 이상~59세 이하								
		60세 이상								
	여자									
	∫									
울산										
경기										
강원										
∫										
제주										

<부록8> 영업용 자동차 등록대수 통계표

영업용			연식					
지역(시·도)	차명	형식	2006	2005	2004	~	~	1980
총계								
서울	그랜저							
	소나타							
	f							
f								
울산								
경기								
강원								
f								
제주								

<부록9> 자산별 등록대장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5.3.31>

(앞 쪽)

세대주성명(한자)										세대번호		9-1. 세대별주민등록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본적지변경사유		
재작성사유										재작성일		세대주확인		본적			1			2			호주 성명	
주소이동사항	통	반		주소			전입일자	전출일자	주소이동사항	통	반		주소			전입일자	전출일자							
	/	1						/		7														
	/	2						/		8														
	/	3						/		9														
	/	4						/		10														
	/	5						/		11														
	/	6						/		12														
세대주와의 관계	번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본적확인		변동사유						
	1																							
	2																							
	3																							
	4																							
	5																							
	6																							
	7																							
	8																							
	9																							
	10																							
	11																							

268mm×190mm(화일지 200g/㎡)

(뒤 쪽)

동거 인	번호	성명(한 자)	세대주와 의관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적	호주	전출입 일자	본적지 확인	전주소 및 전출지
	1			년 월 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경유 기관	1	2	3	4	5	6	재작성원본 보관												
							일자												
							보관 기관명												
	7	8	9	10	11	12	작성일												
							일자												
						작성명													

268mm×190mm(화일지 200g/㎡)

[별지 제1호서식]

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2. 토지대장(지적법시행규칙)

고유번호												도면번호					장번호																													
토지소재												지번					축척					비고																								
토지표시											소유자																																			
지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주소				등록번호																														
								m ²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등급수정 연월일																																														
토지등급 (기준수확량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별공시지가기준일																																														용도지역 등
개별공시지가(원 / m ²)																																														

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0mm×190mm
(켄트특수합지 15g/매)

[별지 제2호서식]

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3. 입야대장(지적법시행규칙)

고유번호												도면번호					장번호																													
토지소재												지번					축척					비고																								
토지표시											소유자																																			
지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주소				등록번호																														
								m ²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등급수정 연월일																																														
토지등급 (기준수확량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별공시지가기준일																																														용도지역 등
개별공시지가(원 / m ²)																																														

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0mm×190mm
(켄트특수합지 15g/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997.12.5>

9-4. 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고유번호		일반건축물대장(갑)						장 번호	1-
대지위치		지 번	명칭및 번 호	특 이 사 항					
※ 대지면적	m ²	연 면 적	m ²	※ 지 역	※ 지 구	※ 구 역			
건축면적	m ²	용적률산정 용 연 면 적	m ²	주구조	주용도	층수	지하 :	층/지상 :	층
※ 건 폐 율	%	※ 용 적 률	%	높 이	m	지 붕	부 속 건축물	동	m ²
건 축 물 현 황					소 유 자 현 황				
구분	층별	구 조	용 도	면적(m ²)	성 명 (명 칭)	주 소	소유권 지 분	변 동 일 자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변 동 원 인	

※ 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30304-16631비 97.10.9 승인

297mm×210mm
(켄트지 260g/m²)

고유번호	건축물현황도					장 번호	3-
대지위치	지 번		명칭및 번호		특 이 사 항		
도면의 종류		축척	1 :		도면작성자	(서명 또는 인)	

비 고 : 1. 평면도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별도의 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배치도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97.12.5>

고유번호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장 번호	1-
대지위치		지 번		명칭및 번호		호 수			
※ 대지면적	m ²	연 면 적	m ²	※ 지 역	※ 지 구	※ 구 역			
건축면적	m ²	용적률산정 용 연 면 적	m ²	주구조	주용도	층 수	지하 :	층/지상 :	층
※ 건 폐 율	%	※ 용 적 률	%	높 이	m	지 붕	부 속 건축물	동	m ²
건 축 물 현 황									
구분	층별	구 조	용 도	면적(m ²)	구분	층별	구 조	용 도	면적(m ²)

※ 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30304-16731비

97.10.9 승인

297mm×210mm
(켄트지 260g/m²)

고유번호		건축물현황도				장 번호	3-
대지위치		지 번		명칭및 번호		특 이 사 항	
도면의 종류		축척	1 :	도면작성자		(서명 또는 인)	

비 고 : 1. 평면도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별도의 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배치도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3.11.21>

고유번호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장 번호	1-
대지위치		지 번		명칭및 번호		호명칭		
전 유 부 분					소 유 자 현 황			
구분	층별	구 조	용 도	면적(m ²)	성 명 (명 칭)	주 소	소유권 지 분	변 동 일 자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변 동 원 인
공 용 부 분								

※ 경계벽이 없는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전유부분 구조란에 경계벽이 없음을 기재합니다.

297mm×210mm(보존용지(1종) 120g/m²)

고유번호		장 번호	2-
변 동 사 항		건 축 물 현 황 도	
변동일자	변동내용 및 원인		
기 타 기 재 사 항			
		* 평면도만 작성하며, 평면도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별도의 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축척	1 :	도면작성자	(서명 또는 인)

9-6.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자동차등록원부(갑)					
제 호		총 면		중 제 면	
자동차등록번호		형식승인번호		말소등록일	
차 명				차 종	
차 대 번 호		원동기형식		용 도	
연 식		색 상		출 처 구 분	
최 종 등 록 일		최초접수번호		제 작 연 월 일	
최 종 소 유 자				주민등록번호	
사 용 본 거 지 (차 고 지)					
검사유효기간				등록사항확인일	
점검유효기간				폐 쇄 일 자	
순 위 번 호	사 항 란	세대주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록 일 자	접 수 번 호	
주 등 록 부기등록					
이 등본은 자동차등록원부(갑)의 기재사항과 상위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시 장 · 군 수 또는 구 청 장) 인					

3331-09321비

210mm×297mm

96.10.4승인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4호서식]

자동차등록원부(을)							
제 호		총 면 중 제 면					
을 부 번 호				저당권설정접수번호			
저당권자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자동차소유자	성명(명칭)						
	주 소						
채 무 자	성명(명칭)						
	주 소						
채권가액	원	저당권설정일자				저당권말소일자	
순 위	구 분	사 항 란				등록일자	
공동저장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등							
종 류	자동차번호	설정일자	말소일자	종 류	자동차번호	설정일자	말소일자
폐 쇄 연 월 일							
이 등본은 자동차등록원부(을)의 기재사항과 상위 없음을 증명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년 월 일 </div>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인							

3331-09322비

96.10.4 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m²)

9-7. 선박원부(선박법시행규칙)

1. 조선지		2. 조선자		3.진수일 : 년 월 일	
4.	선박번호				
	IMO번호				
5. 호출부호					
6. 선박의종류					
7. 선박의명칭					
8. 선적항					
9. 선질					
10. 범선의범장					
11. 길이	미터	미터	미터	미터	미터
12. 너비	미터	미터	미터	미터	미터
13. 깊이	미터	미터	미터	미터	미터
14. 총톤수	톤	톤	톤	톤	톤
15. 폐위장소의합계용적	m ³	m ³	m ³	m ³	m ³
16. 상갑판아래의용적	m ³	m ³	m ³	m ³	m ³
17. 상갑판위의용적	m ³	m ³	m ³	m ³	m ³
18. 선수루의용적	m ³	m ³	m ³	m ³	m ³
19. 선교푸의용적	m ³	m ³	m ³	m ³	m ³
20. 선미루의용적	m ³	m ³	m ³	m ³	m ³
21. 갑판실의용적	m ³	m ³	m ³	m ³	m ³
22. 기타장소의용적	m ³	m ³	m ³	m ³	m ³
23. 제외장소의합계용적	m ³	m ³	m ³	m ³	m ³
24. 선수루의용적	m ³	m ³	m ³	m ³	m ³
25. 선교푸의용적	m ³	m ³	m ³	m ³	m ³
26. 선미루의용적	m ³	m ³	m ³	m ³	m ³
27. 갑판실의용적	m ³	m ³	m ³	m ³	m ³
28. 기타장소의용적	m ³	m ³	m ³	m ³	m ³
29. 기관의종류와수					
30. 추진기의종류와수					
31. 등록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32. 기사					

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m²)

(뒤 쪽)

소 유 자					
①성 명 (법인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비고	
공 유 자					
⑥성 명 (법인명)	⑦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⑧주 소	⑨전화번호	⑩비고	
증 서 의 교 부					
⑪증서번호	⑫교부일자	⑬교부사유	⑭증서번호	⑮교부일자	⑯교부사유

9-8. 선적증서원부(선박법시행규칙)

		진수일 : 년 월 일			
①선박번호					
②선박의종류					
③선박의명칭					
④선적항					
⑤선질					
⑥길이	미터	미터	미터	미터	미터
⑦너비	미터	미터	미터	미터	미터
⑧깊이	미터	미터	미터	미터	미터
⑨총톤수	톤	톤	톤	톤	톤
⑩추진기관의 종류					
⑪등록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⑫기사					

190mm×268mm (보존용지(1종) 70g/m²)

소유자				
①성명 (법인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비고
공유자				
⑥성명 (법인명)	⑦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⑧주소	⑨전화번호	⑩비고

증서의 교부

①증서번호	②교부일자	③교부사유	①증서번호	②교부일자	③교부사유

9-9. 어선원부(어선법시행규칙)

조 선 지		조 선 자			
진수연월일		원 명			
어 선 번 호					
호 출 부 호					
어 선 종 류					
어 선 명 칭					
선 적 항					
선 체 재 질					
범선의 범장					
주 요 치 수 (m)	길 이				
	너 비				
	깊 이				
총 톤 수(톤)					
용 적 (m ³)	폐위장소의합계용적				
	상갑판아래의 용적				
	상갑판위의 용적				
	선수루의 용적				
	선교루의 용적				
	선미루의 용적				
	갑판실의 용적				
	기타장소의 용적				
	제외장소의합계용적				
	선수루의 용적				
	선교루의 용적				
	선미루의 용적				
	갑판실의 용적				
기타장소의 용적					
기판의 종류·마력 및 대수	기판 대 마력	기판 대 마력	기판 대 마력	기판 대 마력	
추진기의 종류와 수	추진기 기	추진기 기	추진기 기	추진기 기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때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공유인 때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율					
등록 및 변경등록 연월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록 및 변경등록 사유 등 기타					

48279-05411카 99.3.8 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m²)

[별지 제1호서식]

9-10. 항공기등록원부(항공기등록규칙) ①(앞면)

항공기등록원		1	2	3	4	5	6	7	8	9	10
부용지매수란											
등록 기호란	등록 기호	항공기제 작연월일									
표시란											
등록의 목적		항공기의 종류		항공기의 형식							
항공기의 제작자		항공기의 제작번호		항공기의 정치장							
신규등록 연월일		등록회복 연월일		접수 번호		등록 공무원인					
표시의 변경·경정란											
표 시 부		사 항	등록연월일	접수번호	등록 공무원인						
말 소 등록란	원인	등록 연월일	접수 번호	등록 공무원인							

33332-08721비

210mm×297mm

92.9.17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①(뒷면)

	순위번호란		사 항 란	등 록 연월일	접수번호	등 록 공무원인
	주 등 록	부기등록				
소 유 권 부						

②(앞면)

	등 록 기호란	항공기등록원 부용지매수란	1	2	3	4	5	6	7	8	9	10
	기 타 권 리 부	순위번호란		사 항 란				등 록 연월일	접수번호	등 록 공무원인		
주 등 록		부기등록										

②(뒷면)

기 타 권 리 부	순위번호란		사 항 란	등 록 연월일	접수번호	등 록 공무원인
	주 등 록	부기등록				

9-11. 건설기계등록원부(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별지제14호서식] <개정 2001.8.4>

(앞 쪽)

건설기계등록원부(갑)						
발급번호 :						
연 번	1	2	3	4	5	6
등록번호						
등록일자						
건설기계명	형 식	규 격	차대일련번호		제작국/연식	
제작회사	수입 또는 제작일자		형식승인번호		용도	등록 말소일
최종 소유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또는 대여회사						
사용본거지 또는 대여회사주소						
검사유효기간		~		점검유효기 간		~
등록사항 변경란						
연 번	변경일자	사유	변경사항			접수 번호
이 등본은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의 기재사항과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

(뒤 쪽)

건설기계등록원부(을)					
발급번호 :					
을부번호				접수번호	
저당권 설정권리자	성명·상호				
	주소				
저당권 설정의무자	성명·상호				
	주소				
채무자	성명·상호				
	주소				
채권가액		저당권설정일		저당권말소일자	
기타 관련 사항					
공동저당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등					
종류	건설기계 등록번호	설정일자	말소일자	설정관리자	채무자
이 등본은 건설기계등록원부(을)의 기재사항과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인					

9-12. 입목등기부(입목등기처리규칙)

[부록 제1호양식]



카드의 장수							
1	1-1	1-2	1-3	1-4	1-5	1-6	1-7
2	2-1	2-2	2-3	2-4	2-5	2-6	2-7
3	3-1	3-2	3-3	3-4	3-5	3-6	3-7

등기 번호	제 호
----------	--------

①

표 제 부(입목의 표시)			
표시 번호	표 시 란	표시 번호	표 시 란

표 제 부(입목의 표시)			
표 시 번호	표 시 란	표시 번호	표 시 란

입목등기 제 호 ②

갑 구 (소유권)			
순위 번호	사 항 란	순위 번호	사 항 란

갑 구 (소유권)			
순위 번호	사 항 란	순위 번호	사 항 란

입목등기 제 호 ③

을 구(저당권)			
순위 번호	사 항 란	순위 번호	사 항 란

을 구(저당권)			
순위 번호	사 항 란	순위 번호	사 항 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975.4.25>

9-13. 광업조광원부(광업등록령)

조 광 권 등록 번호	제 호	카 드 의 장 수				
		1	1-1	1-2	1-3	1-4
	조 광 권 (1~)					
표시 번호	표 시 란	표시 번호	표 시 란			

4204-02-(2-1)C

190mm×268mm

75.3.3 승인

(인쇄용지 120g/㎡)

조 광 권			
순위 번호	사 항 란	순위 번호	사 항 란

4204-02-(2-2)

190mm×268mm

75.3.3 승인

(인쇄용지) 120g/㎡)

[별지 제 1 호서식] <개정 2001.6.30>

9-14. 특허등록원부(특허등록령시행규칙)

특 허 번 호		제 호						
권 리 란								
표시번호		사 항						
1번	출 원 연 월 일		년	월	일	출 원 번 호		
	우 선 권	주 장 일 자		년	월	일	주 장 수	
		주 장 국						
	국 제 출 원 일 자		년	월	일	국 제 출 원 번 호		
	원 출 원 일 자		년	월	일	원 출 원 번 호		
	공 고 연 월 일		년	월	일	공 고 번 호		
	특허결정(심결)연월일		년	월	일	청구범위의항수		
	유 별							
	발 명 의 명 칭							
	존속기간(예정)만료일				년	월	일	등록
				년	월	일	등록	
특 허 료 란								
특 허 권 자 란								
순위번호		사 항						
전 용 실 시 권 자 란								
순위번호		사 항						
통 상 실 시 권 자 란								
순위번호		사 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1.6.30>

9-15. 실용신안등록원부(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실용신안등록번호		제 호	
권 리 란			
표시번호	사 항		
1번	출 원 연 월 일	년 월 일	출 원 번 호
	우 선 권	주 장 일 자	년 월 일
		주 장 국	
	국 제 출 원 일 자	년 월 일	국 제 출 원 번 호
	원 출 원 일 자	년 월 일	원 출 원 번 호
	공 고 연 월 일	년 월 일	공 고 번 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년 월 일	청구범위의항수
	유 별		등 록 의 구 분
	고 안 의 명 칭		
	존속기간(예정)만료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록	
등록료란			
실용신안권자란			
순위번호	사 항		
전용실시권자란			
순위번호	사 항		
통상실시권자란			
순위번호	사 항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9-16. 상표등록원부(상표등록령시행규칙)

상표등록번호	제	호				
권리란						
표시번호	사 항					
1번	출원연월일	년	월	일	출원번호	
	우선권	상품류구분	주 장 일 자		주 장 수	주 장 국
		제 류	년	월	일	
	원출원일자	년	월	일	원출원번호	
	공고연월일	년	월	일	공고번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년	월	일	상품류구분수	
	재출원의특례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연월일		년	월	일
		사후지정연월일		년	월	일
	중복국내상표권의표시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국제등록번호					
	지정상품또는지정서비스업	제 류 지정상품				
	색채상표의표시					
	입체상표의표시					
	상표법 제6조제2항 해당여부의 표시					
존속기간(예정)만료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록						
(상표권분할이전) 뒤쪽 참조						
(상표권분할) 뒤쪽 참조						
상 표 권 자 란						
순위번호	사 항					
전 용 사 용 권 자 란						
순위번호	사 항					
통 상 사 용 권 자 란						
순위번호	사 항					
상 표 첨 부 란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상표권분할이전)

접 수 연 월 일 :	접 수 번 호 :
등 록 원 인 :	분 할 이 전 번 호 :
분 할 이 전 지 정 상 품 : 제	류 지 정 상 품 :
	년 월 일 등록

(상표권분할)

접 수 연 월 일 :	접 수 번 호 :
등 록 원 인 :	분 할 이 전 번 호 :
분 할 지 정 상 품 : 제	류 지 정 상 품 :
	년 월 일 등록

9-19. 출판권등록부(저작권법시행규칙)				등록번호
저 작 물	①제 호			
	②종 류		③형태 및 수량	
	④창작 연월일			
	원저작물	⑤제 호		
		⑥저작자		
저 작 자	⑦성 명	(한글)	(한자)	
		(영문)		
	⑧국 적		⑨주민등록번호	
	⑩주 소			
	⑪이메일 주소		⑫전 화 번 호	
	⑬사망연도			
맨 처 음 공 표	⑭연월일		⑮국 가	
	<16>맨처음 공표후 30일 이내에 공표된 국가			
	<17>맨처음 공표시 표시한 저작자 이름			
	<18>공표매체 정보			
	<19>관련등록번호		<20>등록연월일	
등 록 의 내 용				
순위	등록사항			확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p>○출판물의 내용</p>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6.2.1>

(앞 쪽)

9-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저작권법시행규칙)		등록번호	
데이터 베이스	①명 칭		
	②형태 및 수량		
	③제작완료연월일		
데이터 베이스 제작자	④성 명	(한글) (한자) (영문)	
	⑤국 적		⑥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⑦주 소		
	⑧이메일주소	⑨전 화 번 호	
맨 처 음 공 표	⑩연 월 일	⑪국 가	
	⑫맨처음 공표 후 30일 이내에 공표된 국가		
	⑬맨처음 공표 시 표시한 제작자 이름		
	⑭공표매체 정보		
⑮관련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등록연월일	
등 록 의 내 용			
순위	등 록 사 항		확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1.7.26>

9-21. 프로그램등록부(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규칙)			
프로그램 등록 번호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 호			
프로그램 창작 연월일		프로그램 등록 연월일	
프로그램 저 작 자	성명 또는 상 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및 국 적		
프 로 그 램 의 개 요		(별첨 1에 의하여 작성합니다)	
프 로 그 램 복 제 물 에 관 한 사 항			
순 위	내 용	프로그램등록사항 변경내용	
프로그램저작권 등록사항표시	최초 프로그램저작권등록번호(프로그램저작권등록을 한 경우에 한합니다) : 프로그램저작권등록부 : 별첨 2(별지 제9호서식)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별첨 1]

프로그램의 개요

프로그램종류코드 : □□

1. 적용 분야		
2. 주요 기능	본프로그램의 특징	
	주요 기능	
	사용 방법	
	판매 구분	해당란에 ○표할 것 (상업용·비상업용)
3. 사용 기 종		
4. 사 용 O S		
5. 사 용 언 어		
6. 필요한 프로그램		
7. 규모(line, byte)		
8. 기 타		

		면허번호란	제	호								
표 제 부	표 시 번 호 란											
	표 시 란	어장의 위치와 번호란	어업의 종류	어업의 방법								
			면허 연월일	채포물 의종류								
		존 속 기 간	어업의 시기									
			제한 또는 조건									
	표 시 번 호 란											
표 시 란												

갑 구	순 위 번 호 란										
	사 항 란										
을 구	순 위 번 호 란										
	사 항 란										
병 구	순 위 번 호 란										
	사 항 란										
정 구	순 위 번 호 란										
	사 항 란										
비 고 란											